

장:(3000)경제개발비 관:(3100)농수산물개발비 항:(3110)농정개발비 세항:(3111)농정개발사업 세세항:(120)경상적경비 [본청][단위:천원]

과 목		예 산 액	기 정 예 산 액	비 교 증 △ 감	산 출 기 초				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국	도	교	시	초
3000	경제개발비	187,733,381	169,077,675	18,655,706	[국 7,164,866 [균 7,290,143	도 11,611,968 기 783,231	교 264,351 시 160,618,822		
3100	농수산물개발비	47,229,077	39,529,425	7,699,652	[국 4,347,886 [균 2,094,284	도 7,571,923 기 780,900	교 264,351 시 32,169,733		
3110	농정개발	15,026,600	13,137,260	1,889,340	[국 1,333,606 [균 466,000	도 1,409,502 기 315,387	교 215,748 시 11,286,357		
3111	농정개발사업	3,483,340	3,540,892	△57,552	[국 302,700 [균 0	도 270,789 기 0	교 215,748 시 2,694,103		
100	경상예산	612,153	536,780	75,373					
120	경상적경비	612,153	536,780	75,373					
	201 일반운영비	27,330	25,530	1,800					
		27,330	25,530	1,800	01 일반운영비 ○ 1.일반수용비 1,800 - 한-MIFTA타결 대응방안교육 책자유인 9,000원x200부x1회 = 1,800				
	202 여비	72,270	55,890	16,380					
		72,270	55,890	16,380	01 국내여비 ○ 주요업무추진여비 12,600 - 증원(1명) 20,000원x1명x5일x6월 = 600 - 조정분 20,000원x25명x4일x6월 = 12,000				

장:(3000)경제개발비 관:(3100)농수산물개발비 항:(3110)농정개발 세항:(3111)농정개발사업 세세항:(120)경상적경비 [본청][단위:천원]

과	목	예산액	기정 예산액	비교 증△감	산출 기초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
			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친환경농업업무 추진여비 경정(45,000원x4명x4일x9회)-기정(45,000원x3명x4일x9회) = 1,620 ○ 농업진흥지역 정비 업무 추진여비 45,000원x3명x4일x4회 = 2,160
	301 일반보상금	92,753	86,160	6,593	
		7,178	2,610	4,568	09 공익근무요원보상금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공익근무요원 4,568 - 기본급 경정(88,600원x2명x12월)-기정(65,000원x1명x12월) = 1,347 - 중식비 경정(5,000원x2명x22일x12월)-기정(4,000원x1명x22일x12월) = 1,584 - 교통비 경정(2,000원x2명x22일x2회x12월)-기정(1,800원x1명x22일x12월) = 1,637
		45,675	43,650	2,025	10 행사실비보상금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한-미FTA 도·중앙단위 교육참석자여비 45,000원x15명x1일x3회 = 2,025
	307 민간이전	415,600	365,000	50,600	

과 목		예 산 액	기 정 예 산 액	비 교 증 △ 감	산 출 기 초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
		415,600	365,000	50,600	02 민간경상보조 ○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 지원사업 경정(2,078,000,000원x20/100)-기정(1,825,000,000원x20/100) = 50,600
200	사업예산	1,853,512	2,004,112	△ 150,600	[국 302,700 도 270,789 교 215,748] [균 0 기 0 시 1,064,275]
210	보조사업	1,411,512	1,562,112	△ 150,600	[국 302,700 도 270,789 교 215,748] [균 0 기 0 시 622,275]
	301 일반보상금	1,326,560	1,478,560	△ 152,000	
		170,000	407,000	△ 237,000	01 사회보장적수혜금 ○ 여성농업일손돕기 경정(170,000,000원x1식)-기정(407,000,000원x1식) = △ 237,000 (국) △ 118,500 (도) △ 35,550 (시) △ 82,950
		1,075,160	987,160	88,000	02 장학금및학자금 ○ 농업인 영유아 자녀양육비 경정(380,000,000원x1식)-기정(292,000,000원x1식) = 88,000 (국) 44,000 (도) 13,200 (시) 30,800

과 목		예 산 액	기 정 예 산 액	비 교 증 △ 감	산 출 기 초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
		14,000	28,000	△14,000	10 행사실비보상금 ○ 최고농업경영자과정 교육 경정(2,500,000원x4명x80/100) - 기정(2,500,000원x11명x80/100) = △14,000 (도) △5,250 (시) △8,750
		65,400	54,400	11,000	12 기타보상금 ○ 창업농 후견인제 및 농업인턴제 5,500,000원x2명 = 11,000 (국) 7,700 (도) 3,300
	307 민간이전	35,800	34,400	1,400	
		35,800	34,400	1,400	02 민간경상보조 ○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경정(8,500,000원x4개소x70/100) - 기정(8,000,000원x4개소x70/100) = 1,400 (국) 1,000 (도) 200 (시) 200
400	예비비등	1,017,675	1,000,000	17,675	
420	기타	1,017,675	1,000,000	17,675	

장:(3000)경제개발비 관:(3100)농수산개발비 항:(3110)농정개발 세항:(3111)농정개발사업 세세항:(420)기타 [본청][단위:천원]

과 목		예 산 액	기 정 예 산 액	비 교 증 △ 감	산 출 기 초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
	802 반환금기타	17,675	0	17,675	
		13,596	0	13,596	01 국고보조금반환금 ○ 2006년 영유아양육비 지원사업 1,796,000원 = 1,796 ○ 2006년 여성농업인 일손돕기사업 11,800,000원 = 11,800
		4,079	0	4,079	02 시·도비보조금반환금 ○ 2006년 영유아양육비 지원사업 539,000원 = 539 ○ 2006년 여성농업인 일손돕기사업 3,540,000원 = 3,540

장:(3000)경제개발비 관:(3100)농수산물개발비 항:(3110)농정개발 세항:(3112)농산사업 세세항:(120)경상적경비 [본청][단위:천원]

과 목		예 산 액	기 정 예 산 액	비 교 증 △ 감	산 출 기 초					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국	도	교	기	시	
3112	농산사업	6,535,243	5,271,913	1,263,330	[국 [균	960,890 22,000	도 기	349,783 0	교 시	0 5,202,570]
100	경상예산	331,589	280,069	51,520						
120	경상적경비	323,011	271,491	51,520						
	201 일반운영비	186,681	185,561	1,120						
		186,681	185,561	1,120	01 일반운영비					
					○ 4.운영수당					1,120
					- 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 위원 참석수당					
					70,000원x8명x2회				=	1,120
	301 일반보상금	81,330	30,930	50,400						
		22,400	0	22,400	07 민간인국외여비					
					○ 우수친환경농업인 해외선진지 견학					
					2,800,000원x8명				=	22,400
		28,000	0	28,000	12 기타보상금					
					○ 비재활용 폐영농자재 운송 및 처리보상금					
					70,000원x400m³				=	28,000
200	사업예산	6,203,654	4,991,844	1,211,810	[국 [균	960,890 22,000	도 기	349,783 0	교 시	0 4,870,981]
210	보조사업	3,304,846	2,175,336	1,129,510	[국 [균	960,890 22,000	도 기	349,783 0	교 시	0 1,972,173]

장:(3000)경제개발비 관:(3100)농수산개발비 항:(3110)농정개발 세항:(3112)농산사업 세세항:(210)보조사업 [본청][단위:천원]

과 목		예 산 액	기 정 예 산 액	비 교 증 △ 감	산 출 기 초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
		5,600	0	5,600	07 민간인국외여비 ○ 2007년 친환경농업 실천 우수농업인 해외선진지 견학 2,800,000원x2명 = 5,600 (도) 1,120 (시) 4,480
		603,000	342,000	261,000	12 기타보상금 ○ 조건불리직불제사업(627ha) 250,800,000원x1식 = 250,800 (국) 175,560 (도) 22,572 (시) 52,668 ○ 폐비닐수거 보상금 경정(100,000원x480톤)-기정(30,000원x1,600톤) = 0 (국) 600 (시) △600 ○ 경관보전 직접지불제 170원x60,000㎡ = 10,200 (국) 7,140 (시) 3,060
	402 민간자본이전	2,648,856	1,799,856	849,000	
		2,648,856	1,799,856	849,000	01 민간자본보조 ○ 미국종합처리장 건조저장시설 지원 경정(1,000,000,000원x2식x80/100) - 기정(1,000,000,000원x1식x80/100) = 800,000

장:(3000)경제개발비 관:(3100)농수산개발비 항:(3110)농정개발 세항:(3112)농산사업 세세항:(210)보조사업 [본청][단위:천원]

과 목		예 산 액	기 정 예 산 액	비 교 증 △ 감	산 출 기 초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
					(국) 220,000 (시) 580,000
					○ FTA대응 생산비절감형 농기계지원(곡물건조기) 7,000,000원x14대x50/100 = 49,000 (도) 16,970 (시) 32,030
220	자체사업	2,898,808	2,816,508	82,300	
	402 민간자본이 전	2,896,308	2,814,008	82,300	
		2,896,308	2,814,008	82,300	01 민간자본보조 ○ 농작업보조기구 지원(무릎관절 보호대) 40,000원x400개x70/100 = 11,200 ○ 산물벼 건조저장 시스템 지원 30,000,000원x2개소x80/100 = 48,000 ○ 발효액비제조기 지원 3,300,000원x10대x70/100 = 23,100

장:(300)경제개발비 관:(310)농수산물개발비 항:(3110)농정개발 세항:(3115)유통특작사업 세세항:(120)경상적경비 [본청][단위:천원]

과	목	예산액	기정 예산액	비교 증△감	산출 기초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
3115 유통특작사업		2,868,808	2,178,970	689,838	[국 70,016 도 550,930 교 0] [균 44,000 기 315,387 시 1,888,475]
100 경상예산		45,850	44,950	900	
120 경상적경비		45,850	44,950	900	
	202 여비	900	0	900	
		900	0	900	01 국내여비 ○ 경북능금홍보행사 근무자여비 45,000원x5명x4일 = 900
200 사업예산		2,698,997	2,134,020	564,977	[국 70,016 도 550,930 교 0] [균 44,000 기 315,387 시 1,718,664]
210 보조사업		2,349,291	1,785,814	563,477	[국 70,016 도 550,930 교 0] [균 44,000 기 315,387 시 1,368,958]
	301 일반보상금	136,992	134,992	2,000	
		2,500	500	2,000	10 행사실비보상금 ○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 교육 참석농가 급식제공 5,000원x80명 = 400 (국) 400 ○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 운영참여농가현장견학 여비 40,000원x40명 = 1,600 (국) 1,600
	308 자치단체등	370,917	0	370,917	

장:(3000)경제개발비 관:(3100)농수산물개발비 항:(3110)농정개발 세항:(3115)유통특작사업 세세항:(210)보조사업 [본청][단위:천원]

과	목	예산액	기정 예산액	비교 증△감	산출 기초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
	이전				
		370,917	0	370,917	06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 ○ 우수농수축산물 학교급식 식재료 구입비 지원 370,917 (도) 111,276 (시) 259,641 - 부서변경 164,909,000원x1식 = 164,909 (도) 49,473 (시) 115,436 - 추가분 206,008,000원x1식 = 206,008 (도) 61,803 (시) 144,205
	402 민간자본이 전	1,836,102	1,645,542	190,560	
		1,836,102	1,645,542	190,560	01 민간자본보조 ○ 버섯재배사 현대화사업 400,000,000원x1식x30/100 = 120,000 (도) 40,000 (시) 80,000 ○ 친환경과원관리 효율화사업(승용예취기 지원) 8,900,000원x2대x50/100 = 8,900 (도) 1,780 (시) 7,120 ○ 브랜드사용 지정농산물 지원사업(포장재 지원) 6,664,000원x5개소x50/100 = 16,660

장:(3000)경제개발비 관:(3100)농수산물개발비 항:(3110)농정개발 세항:(3115)유통특작사업 세세항:(210)보조사업 [본청][단위:천원]

과 목		예 산 액	기 정 예 산 액	비 교 증 △ 감	산 출 기 초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
					(도) 5,000 (시) 11,660
					○ FTA대응 생산비절감형 농기계지원(승용예취기) 9,000,000원x4대x50/100 = 18,000 (도) 6,230 (시) 11,770
					○ FTA대응 과실장기저장제 지원사업(스마트 후레쉬) 150,000원x300평x60/100 = 27,000 (도) 13,500 (시) 13,500
220	자체사업	349,706	348,206	1,500	
	302 이주및재해 보상금	1,500	0	1,500	
		1,500	0	1,500	02 재해보상금 ○ 3.28 ~ 3.29기간중 강풍피해 농업시설물 재난지원금(비닐하우스) 1,500,000원 = 1,500
400	예비비등	123,961	0	123,961	
420	기타	123,961	0	123,961	
	802 반환금기타	123,961	0	123,961	
		95,353	0	95,353	01 국고보조금반환금

장:(3000)경제개발비 관:(3100)농수산물개발비 항:(3110)농정개발 세항:(3115)유통특작사업 세세항:(420)기타 [본청][단위:천원]

과 목		예 산 액	기 정 예 산 액	비 교 증 △ 감	산 출 기 초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
					○ 2005년 FTA기금 지방자율계획사업 95,353,000원 = 95,353
		28,608	0	28,608	02 시·도비보조금반환금 ○ 2005년 FTA기금 지방자율계획사업 28,608,000원 = 28,608

장:(3000)경제개발비 관:(3100)농수산물개발비

항:(3110)농정개발

세항:(3116)농산물도매시장운영 세세항:(110)인건비

[본청][단위:천원]

과 목		예 산 액	기 정 예 산 액	비 교 증 △ 감	산 출 기 초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
	3116 농산물도매시장운영	904,547	910,823	△6,276	
	100 경상예산	854,238	864,014	△9,776	
	110 인건비	550,957	568,728	△17,771	
	101 인건비	550,957	568,728	△17,771	
		276,501	283,045	△6,544	01 기본급 ○ 봉급(11명→10명) △6,064 - 9급 경정(994,800원x1명x6월x1.016)-기정(994,800원x1명x12월x1.016) = △6,064 ○ 상여금 △480 - 정근수당 경정(256,217,000원x0.95/12)-기정(262,281,000원x0.95/12) = △480
		74,448	81,919	△7,471	02 수당 ○ 초과근무수당 △7,471 - 시간외근무수당 △7,471 · 감원(1명) -7,210원x1명x27시간x6월x1.016 = △1,186 · 조정분(50시간→37시간) -7,210원x11명x13시간x6월x1.016 = △6,285

과 목		예 산 액	기 정 예 산 액	비 교 증 △ 감	산 출 기 초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
		19,500	20,280	△780	03 정액급식비 ○ 일반직(11명→10명) 경정(16,380,000원)-기정(17,160,000원) = △780
		18,960	19,680	△720	04 교통보조비 ○ 일반직(11명→10명) - 8~9급(기능8급) 경정(5,040,000원)-기정(5,760,000원) = △720
		29,349	29,955	△606	05 명절휴가비 ○ 일반직(11명→10명) 경정(256,217,000원x1.2/12)-기정(262,281,000원x1.2/12) = △606
		48,913	49,923	△1,010	06 가계지원비 ○ 일반직(11명→10명) 경정(256,217,000원x2.0/12)-기정(262,281,000원x2.0/12) = △1,010
		15,170	15,810	△640	07 연가보상비 ○ 일반직(11명→10명) 경정(13,203,000원)-기정(13,843,000원) = △640
120	경상적경비	303,281	295,286	7,995	

장:(3000)경제개발비 관:(3100)농수산물개발비 항:(3110)농정개발 세항:(3116)농산물도매시장운영 세세항:(120)경상적경비 [본청][단위:천원]

과	목	예산액	기정 예산액	비교 증△감	산출 기초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
	201 일반운영비	245,611	240,886	4,725	
		245,611	240,886	4,725	01 일반운영비
					○ 1.일반수용비 400
					- 초과근무확인시스템 설치 400
					· 설치비 100,000원x1대 = 100
					· 용역수수료 50,000원x1대x6월 = 300
					○ 6.급량비 △175
					- 부서운영 급량비
					경정(1,925,000원)-기정(2,100,000원) = △175
					○ 9.시설장비유지비 4,500
					- 농사용암반관정 수증펌프 교체공사
					4,500,000원x1공 = 4,500
	202 여비	24,380	20,180	4,200	
		24,380	20,180	4,200	01 국내여비
					○ 주요업무추진여비 4,200
					- 감원(1명) -20,000원x1명x5일x6월 = △600
					- 조정분 20,000원x10명x4일x6월 = 4,800

장:(3000)경제개발비 관:(3100)농수산물개발비 항:(3110)농정개발 세항:(3116)농산물도매시장운영 세세항:(120)경상적경비 [본청][단위:천원]

과	목	예산액	기정 예산액	비교 증△감	산출기초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
	204 직무수행경비	28,470	29,400	△930	
		20,370	21,000	△630	02 직급보조비 ○ 직급보조비 △630 - 8~9급(기능8급) 경정(4,410,000원)-기정(5,040,000원) = △630
		6,900	7,200	△300	03 특정업무수행활동비 ○ 대민활동비 경정(5,700,000원)-기정(6,000,000원) = △300
	200 사업예산	50,309	46,809	3,500	
	220 자체사업	50,309	46,809	3,500	
	405 자산취득비	4,200	700	3,500	
		4,200	700	3,500	01 자산및물품취득비 ○ 전자복사기 구입 3,500,000원x1대 = 3,500

장:(3000)경제개발비 관:(3100)농수산개발비 항:(3120)축수산진흥 세항:(3121)축산진흥사업 세세항:(110)인건비 [본청][단위:천원]

과 목		예 산 액	기 정 예 산 액	비 교 증 △ 감	산 출 기 초				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국	도	교	시	초
3120	축수산진흥	26,178,108	20,580,674	5,597,434	[국 2,677,908 [균 1,560,284	도 5,962,817 기 465,513	교 21,240 시 15,490,346]	
3121	축산진흥사업	2,500,150	1,691,827	808,323	[국 284,508 [균 30,284	도 297,297 기 393,513	교 0 시 1,494,548]	
100	경상예산	188,912	131,511	57,401	[국 9,441 [균 0	도 0 기 0	교 0 시 179,471]	
110	인건비	22,907	22,286	621	[국 9,441 [균 0	도 0 기 0	교 0 시 13,466]	
	101 인건비	22,907	22,286	621					
		653	0	653	02 수당 ○ 공익수의사 초과근무수당 5,439원x1명x15시간x8개월		=	653	
		10,001	10,033	△32	08 기타직보수 ○ 공익수의사 인건비 경정(9,441,000원x1식)-기정(10,033,000원x1식) (국)		=	△592 △592	
					○ 공익수의사 방역활동 장려수당 70,000원x1명x8월		=	560	
120	경상적경비	166,005	109,225	56,780					
	202 여비	2,505	0	2,505					
		2,505	0	2,505	01 국내여비				

장:(3000)경제개발비 관:(3100)농수산물개발비 항:(3120)축수산진흥 세항:(3121)축산진흥사업 세세항:(120)경상적경비 [본청][단위:천원]

과	목	예산액	기정 예산액	비교 증△감	산출 기초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
			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공익수의사 방역활동추진여비 20,000원x1명x3일x8개월 = 480 ○ 축산위생 업무추진여비 45,000원x3명x3일x5회 = 2,025
	301 일반보상금	146,550	92,275	54,275	
		138,750	84,475	54,275	12 기타보상금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배회동물 사육치료비 경정(3,530원x500마리x30일)-기정(3,530원x250마리x30일) = 26,475 ○ 부루세라 검사 보정비 5,000원x5,560두 = 27,800
200 사업예산		2,310,698	1,560,316	750,382	[국 275,067 도 297,297 교 0] [균 30,284 기 393,513 시 1,314,537]
210 보조사업		1,626,763	1,300,031	326,732	[국 275,067 도 297,297 교 0] [균 30,284 기 393,513 시 630,602]
	206 재료비	124,173	120,077	4,096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가축방역약품 구입 경정(71,823,000원x1식)-기정(69,047,000원x1식) = 2,776 (국) 1,918 (도) 429 (시) 429 ○ 송아지 설사예방약 구입 경정(11,000원x1,250두)-기정(11,000원x1,130두) = 1,320 (도) 396 (시) 924
	301 일반보상금	253,042	265,482	△12,440	

과 목		예 산 액	기 정 예 산 액	비 교 증 △ 감	산 출 기 초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
		253,042	265,482	△12,440	12 기타보상금
					○ 구제역 방역 공동방제단 운영비 지원
					경정(87,268,000원x1식)-기정(87,480,000원x1식) = △212
					(도) △32
					(기) △106
					(시) △74
					○ 예방접종 시술비
					경정(13,140,000원x1식)-기정(12,040,000원x1식) = 1,100
					(국) 660
					(도) 220
					(시) 220
					○ 부루세라 검사채혈비
					경정(5,000원x5,560두)-기정(5,000원x2,520두) = 15,200
					(국) 7,600
					(도) 2,280
					(시) 5,320
					○ 송아지 설사병 예방접종 시술비
					경정(1,000원x1,250두)-기정(1,000원x1,130두) = 120
					(도) 36
					(시) 84
					○ 한우클러스터사업
					경정(70,020,000원x1식)-기정(98,668,000원x1식) = △28,648
					(도) △3,752
					(균) △12,502
					(시) △12,394
	307 민간이전	356,504	345,704	10,800	

장:(3000)경제개발비 관:(3100)농수산개발비 항:(3120)축수산진흥 세항:(3121)축산진흥사업 세세항:(210)보조사업 [본청][단위:천원]

과 목		예 산 액	기 정 예 산 액	비 교 증 △ 감	산 출 기 초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
		356,504	345,704	10,800	02 민간경상보조 ○ 학교우유급식사업 경정(334,732,000원x1식)-기정(323,932,000원x1식) = 10,800 (도) 972 (기) 7,559 (시) 2,269
	402 민간자본이 전	886,803	562,527	324,276	
		886,803	562,527	324,276	01 민간자본보조 ○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294,276,000원x1식 = 294,276 (도) 64,484 (기) 115,567 (시) 114,225 ○ FTA대응 가축분뇨 고액분리기 지원사업 20,000,000원x3대x50/100 = 30,000 (도) 9,000 (시) 21,000
	220 자체사업	683,935	260,285	423,650	
	402 민간자본이 전	640,485	216,835	423,650	
		640,485	216,835	423,650	01 민간자본보조

장:(3000)경제개발비 관:(3100)농수산개발비 항:(3120)축수산진흥 세항:(3121)축산진흥사업 세세항:(220)자체사업 [본청][단위:천원]

과 목		예 산 액	기 정 예 산 액	비 교 증 △ 감	산 출 기 초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
			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총체보리 사료작물재배 생산지원(FTA대응) 1,650,000원x150ha x 70/100 = 173,250 ○ 친환경축산형 자가사료배합기 지원(FTA대응) 18,000,000원x4대 x 70/100 = 50,400 ○ 한우고기 전문판매타운 설치 지원(FTA대응) 400,000,000원x1개소 x 50/100 = 200,000
400	예비비등	540	0	540	
420	기타	540	0	540	
	802 반환금기타	540	0	540	
		450	0	450	01 국고보조금반환금 ○ 2005년 축산분뇨처리시설 450,000원 = 450
		90	0	90	02 시·도비보조금반환금 ○ 2005년 축산분뇨처리시설 90,000원 = 90

장:(3000)경제개발비 관:(3100)농수산물개발비 항:(3120)축수산물진흥 세항:(3122)해양수산물사업 세세항:(120)경상적경비 [본청][단위:천원]

과 목		예 산 액	기 정 예 산 액	비 교 증 △ 감	산 출 기 초					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					
3122	해양수산물사업	20,455,887	17,070,556	3,385,331	[국 [균	2,393,400 1,530,000	도 기	5,365,520 72,000	교 시	21,240 11,073,727
100	경상예산	482,180	389,995	92,185						
120	경상적경비	479,626	387,441	92,185						
	201 일반운영비	375,186	338,361	36,825						
		335,186	328,361	6,825	01 일반운영비					
					○ 1.일반수용비 3,000					
					- 구룡포과메기특구 홍보물제작 1,000원x3,000부 = 3,000					
					○ 6.급량비 3,825					
					- 부서운영 급량비 경정(4,200,000원)-기정(4,375,000원) = △175					
					- 불법어업단속 근무자 업무추진 급식비 5,000원x10명x20일x4회 = 4,000					
		40,000	10,000	30,000	02 행사운영비					
					○ 수산특산물 홍보 행사비 30,000,000원x1식 = 30,000					
	202 여비	60,240	44,880	15,360						
		60,240	44,880	15,360	01 국내여비					

과	목	예 산 액	기 정 예 산 액	비 교 증 △ 감	산 출 기 초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
			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주요업무추진여비 11,040 <li style="padding-left: 20px;">- 조정분 20,000원x23명x4일x6월 = 11,040 ○ 연안관리 업무추진여비 45,000원x2명x4일x4회 = 1,440 ○ 수산물유통 업무추진여비 45,000원x2명x4일x4회 = 1,440 ○ 향만물류업무 비교견학(부서변경) 경정(45,000원x4명x4일x2회)-기정(45,000원x4명x5일x4회) = △2,160 ○ 해양관광개발 타시도 견학 및 벤치마킹 여비 45,000원x4명x4일x5회 = 3,600
	307 민간이전	40,000	0	40,000	
		40,000	0	40,000	04 민간행사보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구룡포 오징어잡이 체험행사 10,000,000원x1식 = 10,000 ○ 구룡포특산물(과메기)축제 30,000,000원x1식 = 30,000
200 사업예산		19,018,492	16,680,561	2,337,931	[국 2,393,400 도 5,365,520 교 21,240] [균 1,530,000 기 72,000 시 9,636,332]
210 보조사업		17,749,199	16,162,781	1,586,418	[국 2,393,400 도 5,365,520 교 0] [균 1,530,000 기 72,000 시 8,388,279]
	201 일반운영비	340,200	343,200	△3,000	
		140,200	133,200	7,000	01 일반운영비

과	목	예산액	기정 예산액	비교 증△감	산출기초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
					○ 1.일반수용비 7,000 (도) 7,000 - 지방어항(2개소) 공유재산등록측량비 및 등기수수료 7,000,000원x1식 = 7,000 (도) 7,000
		200,000	210,000	△10,000	02 행사운영비 ○ 제12회 바다의 날 기념행사 경정(200,000,000원x1식)-기정(210,000,000원x1식) = △10,000
	401 시설비및부 대비	11,867,579	11,038,221	829,358	
		11,832,099	11,012,500	819,599	01 시설비 ○ 북부해수욕장 화장실, 샤워장, 탈의장 신축(부서변경) (도) 486,599 (시) 125,000 361,599 - 시설비 486,599,000원x1식 = 486,599 (도) 125,000 (시) 361,599 ○ 화진1리항 어항시설사업 경정(533,000,000원x1식)-기정(200,000,000원x1식) = 333,000 (도) 100,000 (시) 233,000

과 목		예 산 액	기 정 예 산 액	비 교 증 △ 감	산 출 기 초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
		6,959	0	6,959	02 감리비 ○ 북부해수욕장 화장실, 샤워장, 탈의장 신축공사 감리비 486,599,000원x1.43/100 = 6,959
		28,521	25,721	2,800	03 시설부대비 ○ 북부해수욕장 화장실 신축 시설부대비(부서변경) 2,800,000원x1식 = 2,800
	402 민간자본이 전	2,523,020	1,762,960	760,060	
		1,660,460	900,400	760,060	01 민간자본보조 ○ 수산동물질병예방백신 공급(115ℓ) 경정(46,000,000원x80/100)-기정(23,000,000원x80/100) = 18,400 (국) 9,200 (시) 9,200 ○ 2006년 어업재해(우렁챙이)피해복구사업(제45조) 396,060,000원x1식 = 396,060 (도) 396,060 ○ 연안어선 저온저장시설 사업(25척) 150,000,000원x80/100 = 120,000 (도) 45,000 (시) 75,000 ○ FTA대응 동해안특산어류 종묘대지원(188,000마리)

장:(3000)경제개발비 관:(3100)농수산개발비 항:(3120)축수산진흥 세항:(3122)해양수산사업 세세항:(210)보조사업 [본청][단위:천원]

과 목		예 산 액	기 정 예 산 액	비 교 증 △ 감	산 출 기 초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
					282,000,000원x80/100 = 225,600 (도) 84,600 (시) 141,000
220	자체사업	1,269,293	517,780	751,513	[국 0 도 0 교 21,240] [균 0 기 0 시 1,248,053]
	308 자치단체등 이전	25,400	14,400	11,000	
		11,000	0	11,000	05 자치단체간부담금 ○ 어구사용금지구역설정 시험조업 조사비 시군 부담금 11,000,000원x1식 = 11,000
	401 시설비및부 대비	917,513	217,000	700,513	
		847,000	217,000	630,000	01 시설비 ○ 어촌종합개발사업(하정권역) 기본조사설계 40,000,000원x1식 = 40,000 ○ 해양낚시공원조성 기본조사설계 30,000,000원x1식 = 30,000 ○ 대보1리항 어항시설사업(특교 500백만원) - 실시설계비 500,000,000원x3.39/100 = 16,950 - 시설비 483,050,000원x1식 = 483,050 ○ 월포해수욕장 샤워장 신축(부기조정) 60,000

장:(3000)경제개발비 관:(3100)농수산개발비 항:(3120)축수산진흥 세항:(3122)해양수산사업 세세항:(220)자체사업 [본청][단위:천원]

과	목	예산액	기정 예산액	비교 증△감	산출기초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
					- 실시설계비 60,000,000원x5.052/100 = 3,032
					- 시설비 56,968,000원x1식 = 56,968
		513	0	513	03 시설부대비 ○ 월포해수욕장 샤워장 신축 시설부대비 56,968,000원x0.90/100 = 513
		70,000	0	70,000	04 행사관련시설비 ○ 포항과메기 전국홍보 및 체험행사 70,000,000원x1식 = 70,000
	402 민간자본이 전	235,400	195,400	40,000	
		235,400	195,400	40,000	01 민간자본보조 ○ 과메기거리 시설물 설치 20,000,000원x1식 = 20,000 ○ 수산물포장재 개발 지원 20,000,000원x1식 = 20,000
	400 예비비등	955,215	0	955,215	
	420 기타	955,215	0	955,215	
	802 반환금기타	955,215	0	955,215	
		476,673	0	476,673	01 국고보조금반환금

장:(3000)경제개발비 관:(3100)농수산개발비 항:(3120)축수산진흥 세항:(3122)해양수산사업 세세항:(420)기타 [본청][단위:천원]

과 목		예 산 액	기 정 예 산 액	비 교 증 △ 감	산 출 기 초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
					○ 2005년 제14호 태풍 "나비" 피해복구(생계비) 13,383,000원 = 13,383
					○ 2005년 제14호 태풍 "나비" 피해복구(어망,어구) 23,394,000원 = 23,394
					○ 2005년 제14호 태풍 "나비" 피해복구(증양식시설) 8,920,000원 = 8,920
					○ 2005년 제14호 태풍 "나비" 피해복구(생물입식) 384,437,000원 = 384,437
					○ 2004년 태풍 "메기" 피해복구(어선) 433,000원 = 433
					○ 2005년 제14호 태풍 "나비" 피해복구(어선) 13,154,000원 = 13,154
					○ 2005년 10.21~24 강풍,풍랑피해복구(어선) 67,750원 = 68
					○ 2005년 12.3~7 강풍,풍랑피해복구(어선) 6,610,000원 = 6,610
					○ 2005년 태풍 "나비" 지방어항 피해복구사업 9,442,060원 = 9,443
					○ 2005년 태풍 "나비" 소규모어항 피해복구사업 10,990,550원 = 10,991
					○ 2006년 VHF무선설비사업 5,840,000원 = 5,840
		478,542	0	478,542	02 시·도비보조금반환금

과 목		예 산 액	기 정 예 산 액	비 교 증 △ 감	산 출 기 초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
					○ 2005년 제 14호 태풍 "나비" 피해복구(어망,어구) 3,743,000원 = 3,743
					○ 2005년 제 14호 태풍 "나비" 피해복구(증양식시설) 884,000원 = 884
					○ 2005년 제 14호 태풍 "나비" 피해복구(생물입식) 35,773,000원 = 35,773
					○ 2004년 태풍 "메기" 피해복구(어선) 71,000원 = 71
					○ 2005년 제 14호 태풍 "나비" 피해복구(어선) 2,103,120원 = 2,104
					○ 2005년 10.21~24 강풍,풍랑피해복구(어선) 11,080원 = 12
					○ 2005년 12.3~7 강풍,풍랑피해복구(어선) 1,322,000원 = 1,322
					○ 2005년 태풍 "나비" 지방어항 피해복구사업 3,796,330원 = 3,797
					○ 2005년 태풍 "나비" 소규모어항 피해복구사업 1,772,230원 = 1,773
					○ 2006년 지방어항 시설사업 32,215,850원 = 32,216
					○ 2006년 소규모어항 시설사업 139,715,050원 = 139,716
					○ 2006년 조업중 인양된 해양쓰레기수매사업 27,322,000원 = 27,322
					○ 2006년 해안가 방치쓰레기 수거사업 485,000원 = 485

장:(3000)경제개발비 관:(3100)농수산개발비 항:(3120)축수산진흥 세항:(3123)항만물류사업 세세항:(210)보조사업 [본청][단위:천원]

과 목		예 산 액	기 정 예 산 액	비 교 증 △ 감	산 출 기 초					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국	도	교	초		
3123	항만물류사업	3,222,071	1,818,291	1,403,780	[국 [균	0 0	도 기	300,000 0	교 시	0 2,922,071
200	사업예산	3,181,780	1,778,000	1,403,780	[국 [균	0 0	도 기	300,000 0	교 시	0 2,881,780
210	보조사업	603,780	0	603,780	[국 [균	0 0	도 기	300,000 0	교 시	0 303,780
	401 시설비및부 대비	603,780	0	603,780						
		600,000	0	600,000	01 시설비					
					○ 영일만항 홍보조형물 설치(고속도로변)					
					600,000,000원x1식				=	600,000
									(도)	300,000
									(시)	300,000
		3,780	0	3,780	03 시설부대비					
					○ 영일만항 홍보조형물 설치 시설부대비					
					600,000,000원x0.63/100				=	3,780
220	자체사업	2,578,000	1,778,000	800,000						
	502 출자금	2,578,000	1,778,000	800,000	○ 영일만항개발(1-1단계)민간투자사업 지분참여 출자금					
					경정(2,578,000,000원)-기정(1,778,000,000원)				=	800,000

장:(3000)경제개발비 관:(3100)농수산개발비 항:(3130)농업기술진흥 세항:(3131)서무관리 세세항:(110)인건비 [본청][단위:천원]

과 목		예 산 액	기 정 예 산 액	비 교 증 △ 감	산 출 기 초				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국	도	교	시	초
3130	농업기술진흥	6,024,369	5,811,491	212,878	[국 336,372 [균 68,000	도 199,604 기 0	교 27,363 시 5,393,030		
3131	서무관리	4,137,345	4,021,974	115,371	[국 107,794 [균 64,492	도 96,354 기 0	교 27,363 시 3,841,342		
100	경상예산	3,006,263	2,954,996	51,267	[국 12,979 [균 4,242	도 0 기 0	교 16,459 시 2,972,583		
110	인건비	2,405,969	2,392,578	13,391	[국 12,979 [균 4,242	도 0 기 0	교 5,634 시 2,383,114		
	101 인건비	2,405,969	2,392,578	13,391					
		1,348,924	1,329,778	19,146	01 기본급 ○ 봉급(45명→47명) 17,741 - 기능9급 1,455,100원x2명x6월x1.016 = 17,741 ○ 상여금 1,405 - 정근수당 경정(1,249,967,000원x0.95/12)-기정(1,232,226,000원x0.95/12) = 1,405				
		327,435	348,611	△21,176	02 수당 ○ 초과근무수당 △22,765 - 시간외근무수당 △19,338 · 증원(2명) 7,210원x2명x27시간x6월x1.016 = 2,374 · 조정분(40시간→27시간)				

과	목	예 산 액	기 정 예 산 액	비 교 증 △ 감	산 출 기 초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
					-7,210원x38명x13시간x6월x1.016 = △21,712
					- 원거리상당소 시간외근무수당 · 대보, 축장(조정분:60시간→47시간) -7,210원x2명x13시간x6월x1.016 = △1,142
					· 구룡포, 송라, 기북, 장기(조정분:50시간→37시간) -7,210원x4명x13시간x6월x1.016 = △2,285
					○ 정액수당 1,589
					- 가족수당(45명→47명) 637
					· 배우자 30,000원x2명x0.78x6월 = 281
					· 부양가족 20,000원x2명x1.48x6월 = 356
					- 자녀학비보조수당(45명→47명) 232
					· 고등학생 385,600원x2명x0.15x2회 = 232
					- 정근수당가산금 720
					· 10~15년미만(3명→5명) 60,000원x2명x6월 = 720
		71,760	70,200	1,560	03 정액급식비
					○ 정액급식비(45명→47명) 130,000원x2명x6월 = 1,560
		71,520	70,080	1,440	04 교통보조비
					○ 8급이하(4명→6명) 120,000원x2명x6월 = 1,440

장:(3000)경제개발비 관:(3100)농수산개발비 항:(3130)농업기술진흥 세항:(3131)서물관리 세세항:(110)인건비 [본청][단위:천원]

과 목		예 산 액	기 정 예 산 액	비 교 증 △ 감	산 출 기 초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
		124,998	123,223	1,775	05 명절휴가비 ○ 명절휴가비(45명→47명) 경정(1,249,967,000원x1.2/12)-기정(1,232,226,000원x1.2/12) = 1,775
		208,328	205,371	2,957	06 가계지원비 ○ 가계지원비(45명→47명) 경정(1,249,967,000원x2.0/12)-기정(1,232,226,000원x2.0/12) = 2,957
		66,908	65,035	1,873	07 연가보상비 ○ 연가보상비(45명→47명) 17,741,000원x19/180 = 1,873
		93,178	87,362	5,816	09 일용인부임 ○ 농기계수리 인부임 2,339 - 기본급 경정(46,000원x2명x300일)-기정(43,400원x2명x300일) = 1,560 - 상여금 경정(1,150,000원x2명x300%)-기정(1,085,000원x2명x300%) = 390 - 명절휴가비 경정(1,150,000원x2명x100%)-기정(1,085,000원x2명x100%) = 130

장:(3000)경제개발비 관:(3100)농수산개발비 항:(3130)농업기술진흥 세항:(3131)사무관리 세세항:(110)인건비 [본청][단위:천원]

과 목		예 산 액	기 정 예 산 액	비 교 증 △ 감	산 출 기 초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
					- 시간외근무수당 경정(8,630원x2명x22시간x12월)-기정(8,140원x2명x22시간x12월) = 259
					○ 농기계수리인부 근속가산금 43,400원x2명x4일x12월x50% = 2,084
					○ 청사관리인부 근속가산금 27,630원x1명x7일x12월x50% = 1,161
					○ 농장 전담 관리요원 근속가산금 38,630원x1명x1일x12월x50% = 232
120	경상적경비	600,294	562,418	37,876	[국 0 도 0 교 10,825] [균 0 기 0 시 589,469]
	201 일반운영비	178,731	178,031	700	
		178,731	178,031	700	01 일반운영비 ○ 1.일반수용비 400 - 초과근무확인시스템 설치 400 · 설치비 100,000원x1대 = 100 · 용역수수료 50,000원x1대x6월 = 300 ○ 6.급량비 300 - 부서운영 급량비 경정(6,100,000원)-기정(5,800,000원) = 300

장:(3000)경제개발비 관:(3100)농수산개발비 항:(3130)농업기술진흥 세항:(3131)서물관리 세세항:(120)경상적경비 [본청][단위:천원]

과	목	예산액	기정 예산액	비교 증△감	산출기초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
	202 여비	119,190	95,910	23,280	
		79,590	63,510	16,080	01 국내여비 ○ 주요업무추진여비 16,080 - 증원(2명) 20,000원x2명x5일x6월 = 1,200 - 조정분 20,000원x31명x4일x6월 = 14,880
		39,600	32,400	7,200	02 월액여비 ○ 읍면상담소 지도공무원(조정분) 80,000원x15명x6월 = 7,200
	204 직무수행경비	120,600	118,740	1,860	
		87,600	86,340	1,260	02 직급보조비 ○ 직급보조비 1,260 - 기능8~9급 105,000원x2명x6월 = 1,260
		16,800	16,200	600	03 특정업무수행활동비 ○ 대민활동비 50,000원x2명x6월 = 600
	301 일반보상금	147,043	135,007	12,036	
		61,778	49,742	12,036	09 공익근무요원보상금

과 목		예산액	기정 예산액	비교 증△감	산출 기초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
					○ 공익근무요원 12,036
					- 기본급 경정(80,000원x17명x12월)-기정(65,000원x17명x12월) = 3,060
					- 중식비 경정(5,000원x17명x22일x12월)-기정(4,000원x17명x22일x12월) = 4,488
					- 교통비 경정(2,000원x17명x22일x2회x12월) - 기정(3,000원x17명x22일x12월) = 4,488
200	사업예산	1,131,082	1,066,978	64,104	[국 94,815 도 96,354 교 10,904] [균 60,250 기 0 시 868,759]
210	보조사업	624,374	583,084	41,290	[국 94,815 도 96,354 교 0] [균 60,250 기 0 시 372,955]
	201 일반운영비	29,580	30,490	△910	
		29,580	30,490	△910	01 일반운영비 ○ 1.일반수용비 △910 (도) △33 (시) △877 - 농촌여성 신문보급 우송료 지원 전액감 -4,840,000원 = △4,840 (도) △1,452 (시) △3,388 - 생활개선회원 신문우송료 지원

과	목	예산액	기정 예산액	비교 증△감	산출 기초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
					17,000원x90명 = 1,530 (도) 459 (시) 1,071
					- FTA대응 농업·농촌발전대회 포항시 특산품 소개 800,000원x3종x1회 = 2,400 (도) 960 (시) 1,440
	202 여비	20,030	22,030	△2,000	
		2,000	4,000	△2,000	03 국외여비 ○ 4-H지도공무원 해외연수 전액감 -2,000,000원 = △2,000 (도) △600 (시) △1,400
	301 일반보상금	58,690	49,490	9,200	
		14,000	12,000	2,000	07 민간인국외여비 ○ 4-H지도자 우수회원 해외연수 경정(2,000,000원x2명)-기정(2,000,000원x1명) = 2,000 (도) 600 (시) 1,400
		42,290	35,090	7,200	10 행사실비보상금 ○ FTA대응 농업·농촌 발전대회 참가여비 20,000원x360명x1회 = 7,200 (도) 2,880 (시) 4,320

과 목		예 산 액	기 정 예 산 액	비 교 증 △ 감	산 출 기 초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
	401 시설비및부 대비	40,000	0	40,000	
		40,000	0	40,000	01 시설비 ○ 송라면 농업인상당소 리모델링 40,000 (도) 12,000 (시) 28,000 - 보수공사 36,000,000원x1개소 = 36,000 (도) 10,800 (시) 25,200 - 실시설계비 36,000,000원x5.46% = 1,966 (도) 590 (시) 1,376 - 폐기물처리비 2,034,000원x1식 = 2,034 (도) 610 (시) 1,424
	402 민간자본이 전	372,000	377,000	△5,000	
		372,000	377,000	△5,000	01 민간자본보조 ○ 소비자농촌웰빙 시범사업 전액감 -15,000,000원 = △15,000 (도) △6,000 (시) △9,000

과 목		예 산 액	기 정 예 산 액	비 교 증 △ 감	산 출 기 초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
					○ 농심나눔센터 조성 경정(10,000,000원x9개소)-기정(10,000,000원x8개소) = 10,000 (도) 3,000 (시) 7,000
220					[국 0 도 0 교 10,904] [균 0 기 0 시 495,804]
자체사업		506,708	483,894	22,814	
	401 시설비및부 대비	101,380	78,566	22,814	
		101,380	78,566	22,814	01 시설비 ○ 구룡포읍 농업인 상담소 리모델링 22,814 - 보수공사 20,000,000원x1개소 = 20,000 - 실시설계비 20,000,000원x6.57% = 1,314 - 폐기물처리비 1,500,000원x1식 = 1,500

장:(300)경제개발비 관:(310)농수산물개발비 항:(313)농업기술진흥 세항:(3132)농촌지도사업 세세항:(120)경상적경비 [본청][단위:천원]

과 목		예산액	기정 예산액	비교 증△감	산출기초					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국	도	교	시	기	
3132	농촌지도사업	1,887,024	1,789,517	97,507	[국 [균	228,578 3,508	도 기	103,250 0	교 시	0 1,551,688
100	경상예산	57,429	58,329	△900						
120	경상적경비	57,429	58,329	△900						
	201 일반운영비	36,954	37,254	△300						
		36,954	37,254	△300	01 일반운영비					
					○ 6.급량비					△300
					- 부서운영 급량비					
					경정(3,300,000원)-기정(3,600,000원)			=		△300
	203 업무추진비	3,600	4,200	△600						
		3,600	4,200	△600	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					
					○ 부서운영 업무추진비(정원:18명→15명)					
					경정(3,600,000원)-기정(4,200,000원)			=		△600
200	사업예산	1,829,595	1,731,188	98,407	[국 [균	228,578 3,508	도 기	103,250 0	교 시	0 1,494,259
210	보조사업	794,759	756,352	38,407	[국 [균	228,578 3,508	도 기	103,250 0	교 시	0 459,423
	206 재료비	28,032	23,762	4,270	○ 쌀 직접지불제 토양검정 시약 및 재료구입					
					213,500원x20종			=		4,270
					(국)					4,270

장:(3000)경제개발비 관:(3200)지역경제개발비 항:(3210)지역경제개발비 세항:(3211)지역경제진흥사업 세세항:(110)인건비 [본청][단위:천원]

과 목		예 산 액	기 정 예 산 액	비 교 증 △ 감	산 출 기 초				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국	도	교	시	초
3200	지역경제개발비	18,948,604	15,211,366	3,737,238	[국 689,566 [균 2,867,000	도 729,891 기 2,331	교 0 시 14,659,816	0]]	
3210	지역경제개발	14,265,713	11,386,508	2,879,205	[국 669,566 [균 1,850,000	도 112,520 기 0	교 0 시 11,633,627	0]]	
3211	지역경제진흥사업	265,707	261,522	4,185	[국 0 [균 0	도 4,950 기 0	교 0 시 260,757	0]]	
100	경상예산	260,757	257,093	3,664					
110	인건비	46,844	22,464	24,380					
	101 인건비	46,844	22,464	24,380					
		1,661	0	1,661	02 수당				
					○ 초과근무수당(전임계약직)				1,187
					- 시간외근무수당				
					7,210원x1명x27시간x6월x1.016	=			1,187
					○ 정액수당(전임계약직)				474
					- 가족수당				358
					· 배우자	30,000원x1명x6월	=		180
					· 부양가족	20,000원x1명x1.48x6월	=		178
					- 자녀학비보조수당				116
					· 고등학생	385,600원x1명x0.15x2회	=		116

과 목		예 산 액	기 정 예 산 액	비 교 증 △ 감	산 출 기 초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
		780	0	780	03 정액급식비 ○ 전임계약직 정액급식비 130,000원x1명x6월 = 780
		708	0	708	07 연가보상비 ○ 전임계약직 연가보상비 42,462,000원x6/360 = 708
		21,231	0	21,231	08 기타직보수 ○ 전임계약직 연봉 21,231 - "가"급 42,462,000원x1명x6/12 = 21,231
120	경상적경비	213,913	234,629	△20,716	
	202 여비	67,440	64,950	2,490	
		67,440	64,950	2,490	01 국내여비 ○ 주요업무추진여비 9,360 - 감원(2명) -20,000원x2명x5일x6월 = △1,200 - 조정분 20,000원x22명x4일x6월 = 10,560 ○ 위조및공산품 시군간교차단속 및 자료수집 연찬회참석(부서변경) 경정(45,000원x4명x3일x4회)-기정(45,000원x4명x3일x10회) = △3,240 ○ 노사안정관련 워크샵참석 및 근로자복지증진 추진여비(부서변경) 경정(45,000원x3명x4일x5회)-기정(45,000원x3명x4일x11회)

과 목		예 산 액	기 정 예 산 액	비 교 증 △ 감	산 출 기 초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
					= 3,240
					○ 옥외광고물 지도단속 출장여비(부서변경) 경정(45,000원x4명x3일x3회)-기정(45,000원x4명x3일x7회) = 2,160
					○ 산업단지 입주업체 애로해소를 위한 업무추진여비(부서변경) 경정(45,000원x2명x5일x3회)-기정(45,000원x2명x5일x8회) = 2,250
					○ 포항시청 출장여비(서울사무소, 부서변경) 경정(45,000원x1명x2일x6회)-기정(45,000원x1명x2일x12회) = 540
					○ 서울,경기일원 현지출장비(서울사무소, 부서변경) 경정(20,000원x1명x10일x6월)-기정(20,000원x1명x10일x12월) = 1,200
					○ 국제교류관련 업무추진여비 45,000원x4명x4일x4회 = 2,880
					○ 에너지관리관련 국내여비(부서변경) 45,000원x4명x4일x4회 = 2,880
	204 직무수행경비	1,800	0	1,800	
		1,500	0	1,500	02 직급보조비 ○ 전임계약직 직급보조비 - "가"급 250,000원x1명x6월 = 1,500

과	목	예산액	기정 예산액	비교 증△감	산출기초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
		300	0	300	03 특정업무수행활동비 ○ 전임계약직 대민활동비 50,000원x1명x6월 = 300
	301 일반보상금	7,543	6,549	994	
		6,213	5,219	994	09 공익근무요원보상금 ○ 공익근무요원 994 - 기본급 경정(80,000원x2명x12월)-기정(65,000원x2명x12월) = 360 - 종식비 경정(5,000원x2명x22일x12월)-기정(4,000원x2명x22일x12월) = 528 - 교통비 경정(2,000원x2명x22일x12월)-기정(1,800원x2명x22일x12월) = 106
	307 민간이전	64,000	90,000	△26,000	
		64,000	90,000	△26,000	02 민간경상보조 ○ 전자상거래 지원센터 운영보조 경정(14,000,000원x1식)-기정(40,000,000원x1식) = △26,000
200 사업예산		4,950	4,429	521	[국 0 도 4,950 교 0] [균 0 기 0 시 0]

과 목		예 산 액	기 정 예 산 액	비 교 증 △ 감	산 출 기 초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
	210 보조사업	4,950	4,429	521	[국 0 도 4,950 교 0] [균 0 기 0 시 0]
	201 일반운영비	4,950	4,429	521	
		4,950	4,429	521	01 일반운영비 ○ 1. 일반수용비 521 (도) 521 - 물가모범업소 인센티브 지원(쓰레기봉투 구입) 경정(4,950,000원x1식)-기정(4,429,000원x1식) = 521 (도) 521

장:(3000)경제개발비 관:(3200)지역경제개발비 항:(3210)지역경제개발 세항:(3212)기업지원사업 세세항:(110)인건비 [본청][단위:천원]

과 목		예 산 액	기 정 예 산 액	비 교 증 △ 감	산 출 기 초		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		
	3212 기업지원사업	1,164,213	1,183,680	△19,467			
	100 경상예산	145,002	164,469	△19,467			
	110 인건비	0	53,669	△53,669			
	101 인건비	0	53,669	△53,669			
		0	4,117	△4,117	02 수당 ○ 서울사무소장 전액감	-4,117,000원	= △4,117
		0	1,560	△1,560	03 정액급식비 ○ 서울사무소장 전액감	-1,560,000원	= △1,560
		0	1,595	△1,595	07 연가보상비 ○ 서울사무소장 전액감	-1,595,000원	= △1,595
		0	30,204	△30,204	08 기타직보수 ○ 서울사무소장 연봉(전임계약직 "다"급) 전액감 -30,204,000원		= △30,204
		0	16,193	△16,193	09 일용인부임 ○ 서울사무소 청사관리 및 업무보조 전액감(부서변경) -16,193,000원		= △16,193

과 목		예 산 액	기 정 예 산 액	비 교 증 △ 감	산 출 기 초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
	120 경상적경비	145,002	110,800	34,202	
	201 일반운영비	40,452	34,540	5,912	
		40,452	34,540	5,912	01 일반운영비
					○ 1.일반수용비 4,760
					- 부서운영 일반수용비 1,760,000원 = 1,760
					- 기업유치에 따른 일반수용비 3,000,000원 = 3,000
					○ 3.공공요금및제세 △2,048
					- 부서운영 공공요금 240,000원 = 240
					- 서울사무소 공공요금(부서변경) △2,288
					· 전화료
					경정(600,000원)-기정(1,200,000원) = △600
					· 전기·가스·상하수도료 전액감
					-720,000원 = △720
					· 인터넷 회선료
					경정(382,000원)-기정(600,000원) = △218
					· 홍보물 및 탁송료 전액감 -750,000원 = △750
					○ 6.급량비 3,200
					- 부서운영 급량비 1,700,000원 = 1,700

과 목		예 산 액	기 정 예 산 액	비 교 증 △ 감	산 출 기 초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
					- 기업유치에 따른 야간근무자 급식 5,000원x5명x10일x6회 = 1,500
	202 여비	31,050	0	31,050	
		31,050	0	31,050	01 국내여비 ○ 주요업무추진여비 18,360 - 신설(17명) 20,000원x17명x5일x6월 = 10,200 - 조정분 20,000원x17명x4일x6월 = 8,160 ○ 위조및공산품 시군간교차단속 및 자료수집연찬회 참석(부서변경) 45,000원x4명x3일x6회 = 3,240 ○ 기업유치에 따른 여비 45,000원x4명x4일x4회 = 2,880 ○ 노사안정관련 워크샵 참석여비(부서변경) 45,000원x3명x4일x4회 = 2,160 ○ 일자리창출 및 기능인력양성 업무추진여비(부서변경) 45,000원x3명x4일x4회 = 2,160 ○ 산업단지 입주업체 애로해소를 위한 업무추진여비(부서변경) 45,000원x2명x5일x5회 = 2,250
	203 업무추진비	2,100	0	2,100	
		2,100	0	2,100	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 ○ 부서운영 업무추진비(정원:17명)

장:(3000)경제개발비 관:(3200)지역경제개발비 항:(3210)지역경제개발 세항:(3212)기업지원사업 세세항:(120)경상적경비 [본청][단위:천원]

과 목		예 산 액	기 정 예 산 액	비 교 증 △ 감	산 출 기 초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
					350,000원x6월 = 2,100
	204 직무수행경비	1,200	6,060	△4,860	
		1,200	5,460	△4,260	02 직급보조비 ○ 서울사무소장 전액감 -1,860,000원 = △1,860 ○ 서울사무소 파견공무원 수당 경정(300,000원x1명x4월)-기정(300,000원x1명x12월) = △2,400
		0	600	△600	03 특정업무수행활동비 ○ 계약직 대민활동비 전액감 -600,000원 = △600

장:(3000)경제개발비 관:(3200)지역경제개발비 항:(3210)지역경제개발 세항:(3213)국제협력 세세항:(110)인건비 [본청][단위:천원]

과 목		예 산 액	기 정 예 산 액	비 교 증 △ 감	산 출 기 초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
3213	국제협력	678,770	619,643	59,127	
100	경상예산	278,037	248,910	29,127	
110	인건비	6,127	0	6,127	
	101 인건비	6,127	0	6,127	
		6,127	0	6,127	10 일시사역인부임 ○ 국제통상관련 일시사역인부 31,300원x1명x180일 = 5,634 ○ 4대보험 기관부담금 5,634,000원x8.74% = 493
120	경상적경비	271,910	248,910	23,000	
	201 일반운영비	47,350	24,350	23,000	
		23,000	0	23,000	02 행사운영비 ○ 무역투자마트 행사 23,000 - 홍보유인물 제작(리플릿, 안내책자, 포스터 등) 3,000,000원x1식 = 3,000 - 참가업체 시설 장비 임차료 1,000,000원x2개사 = 20,000
200	사업예산	400,733	370,733	30,000	

장:(3000)경제개발비 관:(3200)지역경제개발비 항:(3210)지역경제개발 세항:(3213)국제협력 세세항:(220)자체사업 [본청][단위:천원]

과 목		예 산 액	기 정 예 산 액	비 교 증 △ 감	산 출 기 초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
	220 자체사업	400,733	370,733	30,000	
	207 연구개발비	30,000	0	30,000	
		30,000	0	30,000	01 용역비 ○ 포항자유무역지역 지정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연구용역 30,000,000원x1식 = 30,000

장:(3000)경제개발비 관:(3200)지역경제개발비 항:(3210)지역경제개발 세항:(3214)과학기술진흥사업 세세항:(120)경상적경비 [본청][단위:천원]

과 목		예 산 액	기 정 예 산 액	비 교 증 △ 감	산 출 기 초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
3214	과학기술진흥사업	5,099,593	4,344,892	754,701	[국 300,000 도 0 교 0] [균 0 기 0 시 4,799,593]
100	경상예산	571,593	536,892	34,701	
120	경상적경비	571,593	536,892	34,701	
	201 일반운영비	102,357	100,657	1,700	
		51,957	50,257	1,700	01 일반운영비 ○ 1.일반수용비 2,000 - 동북아 암검진센터 및 중계 연구센터 구축사업 계획서 제작 5,000원x200부x2종 = 2,000 ○ 6.급량비 △300 - 부서운영 급량비 경정(2,900,000원)-기정(3,200,000원) = △300
	202 여비	52,770	50,370	2,400	
		52,770	50,370	2,400	01 국내여비 ○ 주요업무추진여비(부서변경) 2,040 - 강원(7명) -20,000원x7명x5일x6월 = △4,200 - 조정분 20,000원x13명x4일x6월 = 6,240 ○ 동북아암검진센터 및 중계연구센터구축사업 추진여비

과 목		예 산 액	기 정 예 산 액	비 교 증 △ 감	산 출 기 초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
					45,000원x3명x4일x6회 = 3,240 ○ 에너지관리관련 국내여비(부서변경) 경정(45,000원x4명x4일x3회)-기정(45,000원x4명x4일x7회) = △2,880
	203 업무추진비	25,600	26,200	△600	
		3,600	4,200	△600	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 ○ 부서운영 업무추진비(정원:16명→13명) 경정(3,600,000원)-기정(4,200,000원) = △600
	301 일반보상금	10,866	9,665	1,201	
		3,211	2,610	601	09 공익근무요원보상금 ○ 공익근무요원 - 기본급 경정(88,600원x1명x12월)-기정(65,000원x1명x12월) = 284 - 중식비 경정(5,000원x1명x22일x12월)-기정(4,000원x1명x22일x12월) = 264 - 교통비 경정(2,000원x1명x22일x12월)-기정(1,800원x1명x22일x12월) = 53
		7,655	7,055	600	10 행사실비보상금

과 목		예 산 액	기 정 예 산 액	비 교 증 △ 감	산 출 기 초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
					○ 동북아 암검진센터 및 중계연구센터 구축 실무추진단 회의 급식 5,000원x20명x6회 = 600
	307 민간이전	380,000	350,000	30,000	
		180,000	150,000	30,000	04 민간행사보조 ○ 아시아 태평양 물리학회 포항행사 지원 30,000,000원x1식 = 30,000
200 사업예산		4,528,000	3,808,000	720,000	[국 300,000 도 0 교 0] [균 0 기 0 시 4,228,000]
210 보조사업		4,398,000	3,678,000	720,000	[국 300,000 도 0 교 0] [균 0 기 0 시 4,098,000]
	307 민간이전	1,048,000	978,000	70,000	
		460,000	440,000	20,000	02 민간경상보조 ○ 지능로봇산업 육성 및 발전방안 분담금 20,000,000원x1식 = 20,000
		588,000	538,000	50,000	05 민간위탁금 ○ 포항소프트웨어 지원센터 운영비 경정(250,000,000원x1식)-기정(200,000,000원x1식) = 50,000
	402 민간자본이 전	2,350,000	1,700,000	650,000	

과 목		예 산 액	기 정 예 산 액	비 교 증 △ 감	산 출 기 초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
		2,350,000	1,700,000	650,000	01 민간자본보조
					○ 포항 지능로봇연구소 건립 경정(1,200,000,000원x1식)-기정(900,000,000원x1식) = 300,000
					○ 포항테크노파크 2단지 조성사업 추진 운영분담금 300,000,000원x1식 = 300,000
					○ 한국전기연구원 유치사업 50,000,000원x1식 = 50,000

장:(300)경제개발비 관:(3200)지역경제개발비 항:(3210)지역경제개발 세항:(3215)근로복지사업 세세항:(120)경상적경비 [본청][단위:천원]

과 목		예 산 액	기 정 예 산 액	비 교 증 △ 감	산 출 기 초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
3215	근로복지사업	1,027,683	913,994	113,689	[국 89,566 도 46,200 교 0] [균 0 기 0 시 891,917]
100	경상예산	302,390	270,890	31,500	
120	경상적경비	302,390	270,890	31,500	
	201 일반운영비	29,490	27,990	1,500	
		19,490	17,990	1,500	01 일반운영비 ○ 1.일반수용비 1,500 - 유료직업소개소업자 교육책자 제작 3,000원x500매 = 1,500
	307 민간이전	210,200	180,200	30,000	
		131,000	101,000	30,000	04 민간행사보조 ○ 전국기능경기대회 참가단체 지원 20,000,000원x1식 = 20,000 ○ 여성취업한마당행사보조 5,000,000원x2회 = 10,000
200	사업예산	723,104	643,104	80,000	[국 89,566 도 46,200 교 0] [균 0 기 0 시 587,338]
210	보조사업	225,066	190,066	35,000	[국 89,566 도 46,200 교 0] [균 0 기 0 시 89,300]
	307 민간이전	158,100	123,100	35,000	

장:(3000)경제개발비 관:(3200)지역경제개발비 항:(3210)지역경제개발 세항:(3215)근로복지사업 세세항:(210)보조사업 [본청][단위:천원]

과 목		예 산 액	기 정 예 산 액	비 교 증 △ 감	산 출 기 초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
		108,100	73,100	35,000	02 민간경상보조 ○ 지역노사정협의회 지원사업 운영비 35,000,000원x1식 = 35,000 (국) 35,000
220	자체사업	498,038	453,038	45,000	
	401 시설비및부 대비	85,700	40,700	45,000	
		85,700	40,700	45,000	01 시설비 ○ 근로자종합복지회관(본관) 외벽 방수공사 45,000,000원x1식 = 45,000
400	예비비등	2,189	0	2,189	
420	기타	2,189	0	2,189	
	802 반환금기타	2,189	0	2,189	
		2,035	0	2,035	01 국고보조금반환금 ○ 2006년 고용촉진훈련사업 2,034,120원 = 2,035
		154	0	154	02 시·도비보조금반환금 ○ 2006년 고용촉진훈련사업 153,030원 = 154

장:(3000)경제개발비 관:(3200)지역경제개발비 항:(3210)지역경제개발 세항:(3216)상가지원 세세항:(120)경상적경비 [본청][단위:천원]

과 목		예 산 액	기 정 예 산 액	비 교 증 △ 감	산 출 기 초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
3216	상가지원	5,783,250	3,866,940	1,916,310	[국 280,000 도 60,000 교 0] [균 1,850,000 기 0 시 3,593,250]
100	경상예산	141,140	109,140	32,000	
120	경상적경비	141,140	109,140	32,000	
	201 일반운영비	96,340	65,540	30,800	
		79,000	48,200	30,800	02 행사운영비 ○ 재래시장 러브투어 운영 경정(450,000원x10대x12월)-기정(450,000원x8대x12월) = 10,800 ○ 중앙상가 거리축제 1,000,000원x4회x5월 = 20,000
	301 일반보상금	5,800	4,600	1,200	
		5,800	4,600	1,200	10 행사실비보상금 ○ 러브투어안내 서포터즈 급식 5,000원x2명x120대 = 1,200
200	사업예산	5,642,110	3,757,800	1,884,310	[국 280,000 도 60,000 교 0] [균 1,850,000 기 0 시 3,452,110]
210	보조사업	3,869,420	3,198,000	671,420	[국 280,000 도 60,000 교 0] [균 1,850,000 기 0 시 1,679,420]
	401 시설비및부 대비	3,041,420	2,370,000	671,420	

과 목		예 산 액	기 정 예 산 액	비 교 증 △ 감	산 출 기 초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
		3,037,616	2,368,616	669,000	01 시설비
					○ 죽도시장 시설현대화 마무리 보완사업
					(국) 80,000
					(시) 64,000
					- 실시설계비 144,000,000원x5.5/100 = 7,920
					- 시설비 136,080,000원x1식 = 136,080
					(국) 80,000
					(시) 56,080
					○ 흥해시장 주차장 조성 및 편의시설 설치
					(국) 200,000
					(시) 325,000
					- 실시설계비 200,000,000원x6.72/100 = 13,440
					- 시설비 511,560,000원x1식 = 511,560
					(국) 200,000
					(시) 311,560
		3,804	1,384	2,420	03 시설부대비
					○ 죽도시장 시설현대화 마무리 보완사업
					136,080,000원x0.72/100 = 980
					○ 흥해시장 주차장 조성 및 편의시설 설치
					200,000,000원x0.72/100 = 1,440
220	자체사업	1,772,690	559,800	1,212,890	

과 목		예 산 액	기 정 예 산 액	비 교 증 △ 감	산 출 기 초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
	401 시설비및부대비	1,197,890	25,000	1,172,890	
		1,190,510	25,000	1,165,510	01 시설비 ○ 중앙상가거리환경개선사업 600,000,000원x1식 = 600,000 ○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 515,510 - 실시설계비 500,000,000원x3.102% = 15,510 - 시설비 500,000,000원x1식 = 500,000 ○ 북부시장 시설환경 정비(인도블럭교체, 방송설비 등) 50,000,000원x1식 = 50,000
		7,380	0	7,380	03 시설부대비 ○ 중앙상가거리환경개선사업 600,000,000원x0.63/100 = 3,780 ○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500,000,000원x0.72% = 3,600
	402 민간자본이전	542,800	502,800	40,000	
		542,800	502,800	40,000	01 민간자본보조 ○ 두호1종합시장 시설환경개선(내외부 도색 등) 40,000,000원x1식 = 40,000

장:(3000)경제개발비 관:(3200)지역경제개발비 항:(3210)지역경제개발 세항:(3217)투자유치활성화 세세항:(120)경상적경비 [본청][단위:천원]

과	목	예산액	기정 예산액	비교 증△감	산출 기초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
3217	투자유치활성화	119,695	130,555	△10,860	
100	경상예산	119,695	130,555	△10,860	
120	경상적경비	119,695	130,555	△10,860	
	201 일반운영비	96,420	99,180	△2,760	
		26,420	29,180	△2,760	01 일반운영비 ○ 1.일반수용비 △1,600 - 부서운영 일반수용비 경정(1,500,000원)-기정(3,100,000원) = △1,600 ○ 6.급량비 △1,160 - 부서운영 급량비 경정(840,000원)-기정(2,000,000원) = △1,160
	202 여비	20,775	27,375	△6,600	
		20,775	27,375	△6,600	01 국내여비 ○ 주요업무추진여비(부서통합) 경정(20,000원x11명x5일x6월)-기정(20,000원x11명x5일x12월) = △6,600
	203 업무추진비	1,500	3,000	△1,500	

장:(300)경제개발비 관:(3200)지역경제개발비 항:(3210)지역경제개발비 세항:(3218)에너지관리 세세항:(120)경상적경비 [본청][단위:천원]

과	목	예산액	기정 예산액	비교 증△감	산출 기초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
3218	에너지관리	126,802	65,282	61,520	[국 0도 1,370교 0] [균 0기 0시 125,432]
100	경상예산	38,432	35,282	3,150	
120	경상적경비	38,432	35,282	3,150	
	301 일반보상금	4,500	1,350	3,150	
		4,500	1,350	3,150	10 행사실비보상금 ○ 신재생 에너지 추진 선진도시 견학 참석자 여비 보상 45,000원x70명 = 3,150
200	사업예산	31,370	30,000	1,370	[국 0도 1,370교 0] [균 0기 0시 30,000]
210	보조사업	1,370	0	1,370	[국 0도 1,370교 0] [균 0기 0시 0]
	201 일반운영비	170	0	170	
		170	0	170	01 일반운영비 ○ 9.시설장비 유지비 170 (도) 170 - 대보풍력발전기 유지에 따른 휴즈 구입 170,000원x1개 = 170 (도) 170
	202 여비	1,200	0	1,200	

장:(300)경제개발비 관:(3200)지역경제개발비 항:(3210)지역경제개발 세항:(3218)에너지관리 세세항:(210)보조사업 [본청][단위:천원]

과 목		예 산 액	기 정 예 산 액	비 교 증 △ 감	산 출 기 초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
		1,200	0	1,200	01 국내여비 ○ 풍력발전기 유지관리에 따른 출장여비(대보) 20,000원x2명x5회x6월 = 1,200 (도) 1,200
	400 예비비등	57,000	0	57,000	
	420 기타	57,000	0	57,000	
	802 반환금기타	57,000	0	57,000	
		57,000	0	57,000	01 국고보조금반환금 ○ 그린빌리지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용역 57,000,000원 = 57,000

장:(3000)경제개발비 관:(3200)지역경제개발비 항:(3220)관광진흥 세항:(3221)관광진흥사업 세세항:(110)인건비 [본청][단위:천원]

과 목		예 산 액	기 정 예 산 액	비 교 증 △ 감	산 출 기 초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
3220	관광진흥	4,682,891	3,824,858	858,033	[국 20,000 도 617,371 교 0] [균 1,017,000 기 2,331 시 3,026,189]
3221	관광진흥사업	4,682,891	3,824,858	858,033	[국 20,000 도 617,371 교 0] [균 1,017,000 기 2,331 시 3,026,189]
100	경상예산	698,333	621,168	77,165	
110	인건비	204,711	204,047	664	
	101 인건비	204,711	204,047	664	
		102,199	101,535	664	09 일용인부임 ○ 학도의용군전승기념관 청사관리인부 근속가산금 27,630원x2명x2일x12월x50% = 664
120	경상적경비	493,622	417,121	76,501	
	201 일반운영비	368,112	308,412	59,700	
		217,112	195,412	21,700	01 일반운영비 ○ 1.일반수용비 21,000 - 어권별(영어, 중국어, 일어)관광홍보물 리후렛 제작 1,000원x7,000부x3종 = 21,000 ○ 4.운영수당 700 - 호미곶관광지 경관조명설치 현상공모 심사위원 수당 700,000원x1식 = 700

과	목	예산액	기정 예산액	비교 증△감	산출 기초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
	307 민간이전	75,100	61,600	13,500	
		75,100	61,600	13,500	04 민간행사보조 ○ 포항문화관광 시티투어 450,000원x1대x30주 = 13,500
200 사업예산		3,976,706	3,203,690	773,016	[국 20,000 도 617,371 교 0] [균 1,017,000 기 2,331 시 2,320,004]
210 보조사업		2,709,916	2,578,500	131,416	[국 20,000 도 617,371 교 0] [균 1,017,000 기 2,331 시 1,053,214]
	201 일반운영비	90,000	30,000	60,000	
		8,000	0	8,000	01 일반운영비 ○ 6. 급량비 8,000 (도) 8,000 - 불빛축제 비상근무자 급식 5,000원x1,600명 = 8,000 (도) 8,000
		82,000	30,000	52,000	02 행사운영비 ○ 포항국제불빛축제 52,000 (도) 52,000 - 행사홍보물 제작(리플릿, 도로표지판, 홍보탑 등) 35,000,000원x1식 = 35,000 (도) 35,000 - 관광객 편의시설물 등 임차(텐트,버스) 17,000,000원x1식 = 17,000

장:(3000)경제개발비 관:(3200)지역경제개발비 항:(3220)관광진흥 세항:(3221)관광진흥사업 세세항:(210)보조사업 [본청][단위:천원]

과	목	예산액	기정 예산액	비교 증△감	산출 기초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
					(도) 17,000
	301 일반보상금	62,340	32,340	30,000	
		15,000	0	15,000	08 외빈초청여비 ○ 주한 대사관 등 외국인 초청경비 15,000,000원x1식 = 15,000 (도) 15,000
		47,340	32,340	15,000	10 행사실비보상금 ○ 자원봉사자 급식 5,000원x3,000명 = 15,000 (도) 15,000
	401 시설비및부 대비	2,487,576	2,466,160	21,416	
		2,201,082	2,184,000	17,082	01 시설비 ○ 호미곶관광지 경관조명설치 공모설계비 300,000,000원x4.38%x1.3 = 17,082
		6,494	2,160	4,334	03 시설부대비 ○ 새천년기념관 건립 공사 1,884,000,000원x0.23/100 = 4,334
	405 자산취득비	20,000	0	20,000	
		20,000	0	20,000	01 자산및물품취득비

장:(3000)경제개발비 관:(3200)지역경제개발비 항:(3220)관광진흥 세항:(3221)관광진흥사업 세세항:(210)보조사업 [본청][단위:천원]

과 목		예 산 액	기 정 예 산 액	비 교 증 △ 감	산 출 기 초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
			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현충시설활성화(학도의용군전승기념관) (국) 20,000 - 영상물관람용 의자 구입 100,000원x100개 = 10,000 (국) 10,000 - 전시용 액자 제작 200,000원x50개 = 10,000 (국) 10,000
220	자체사업	1,266,790	625,190	641,600	
	207 연구개발비	50,000	0	50,000	
		50,000	0	50,000	02 전산개발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문화관광 포털사이트 구축 50,000,000원x1식 = 50,000
	401 시설비및부대비	1,174,120	582,520	591,600	
		964,000	380,000	584,000	01 시설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새천년기념관 주변 주차장 부지 매입(보상비 5필지 5,991㎡) 500,000,000원x1식 = 500,000 ○ 호미곶관광지 상수도 인입공사비 4,000,000원x1식 = 4,000 ○ 구룡포 일본인주택 관광자원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공원,제당 등 복원 80,000,000원x1식 = 80,000

장:(300)경제개발비 관:(3200)지역경제개발비 항:(3220)관광진흥 세항:(3221)관광진흥사업 세세항:(220)자체사업 [본청][단위:천원]

과 목		예 산 액	기 정 예 산 액	비 교 증 △ 감	산 출 기 초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
		6,120	2,520	3,600	03 시설부대비 ○ 관광진흥사업 부대비 500,000,000원x0.72/100 = 3,600
		204,000	200,000	4,000	04 행사관련시설비 ○ 해맞이축전 부대시설물 전기설치 4,000,000원x1식 = 4,000
400	예비비등	7,852	0	7,852	
420	기타	7,852	0	7,852	
	802 반환금기타	7,852	0	7,852	
		6,040	0	6,040	01 국고보조금반환금 ○ 하옥계곡개발 기본계획 수립 6,040,000원 = 6,040
		1,812	0	1,812	02 시·도비보조금반환금 ○ 하옥계곡개발 기본계획 수립 1,812,000원 = 1,812

장:(3000)경제개발비 관:(3300)국토자원보존개발비 항:(3310)산림자원개발

세항:(3311)녹지행정

세세항:(110)인건비

[본청][단위:천원]

과 목		예 산 액	기 정 예 산 액	비 교 증 △ 감	산 출 기 초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
3300	국토자원보존개발비	57,737,735	51,729,694	6,008,041	[국 1,965,604 도 2,615,505 교 0] [균 2,328,859 기 0 시 50,827,767]
3310	산림자원개발	13,732,564	11,358,399	2,374,165	[국 1,885,604 도 1,068,805 교 0] [균 2,028,859 기 0 시 8,749,296]
3311	녹지행정	6,714,134	4,969,259	1,744,875	[국 25,060 도 213,755 교 0] [균 1,000,000 기 0 시 5,475,319]
100	경상예산	222,775	202,882	19,893	[국 19,220 도 2,294 교 0] [균 0 기 0 시 201,261]
110	인건비	73,970	95,761	△21,791	[국 19,220 도 2,294 교 0] [균 0 기 0 시 52,456]
	101 인건비	73,970	95,761	△21,791	
		73,970	95,761	△21,791	10 일시사역인부임 ○ 숲길조사 및 도시녹지관리단 △1,200 (국) △840 (도) △226 (시) △134 - 인부임 경정(25,087,000원)-기정(26,190,000원) = △1,103 (국) △840 (도) △226 (시) △37 - 4대보험 기관부담금 경정(2,193,000원)-기정(2,290,000원) = △97 ○ 가로수 및 녹지시설관리 인부임(부서변경) 경정(48,910원x6명x10일x4회)-기정(48,910원x6명x10일x8회)

과 목		예 산 액	기 정 예 산 액	비 교 증 △ 감	산 출 기 초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
					= △11,738
					○ 녹지시설 민원처리 인부임(부서변경) 경정(4,891,000원)-기정(6,114,000원) = △1,223
					○ 녹지시설 시비작업 인부임 전액감(부서변경) -4,891,000원 = △4,891
					○ 녹지시설 사후관리 인부임(부서변경) 경정(12,913,000원)-기정(15,652,000원) = △2,739
120	경상적경비	148,805	107,121	41,684	
	201 일반운영비	101,735	70,641	31,094	
		101,735	70,641	31,094	01 일반운영비
					○ 1.일반수용비 3,500
					- 전기 안전관리대행 수수료(고사분수) 500,000원x7월 = 3,500
					○ 3.공공요금및제세 30,000
					- 북부해수욕장 고사분수 전기요금 경정(8,000,000원x6월)-기정(3,000,000원x6월) = 30,000
					○ 6.급량비 260
					- 부서운영 급량비 경정(2,885,000원)-기정(2,625,000원) = 260
					○ 8.연료비 △4,266

과 목		예 산 액	기 정 예 산 액	비 교 증 △ 감	산 출 기 초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
					- 도시녹화시설물 관리장비 유류대(부서변경) △4,266 · 휘발유 경정(1,485원x30ℓx15대)-기정(1,485원x200ℓx15대) = △3,786 · 엔진오일 경정(4,000원x2ℓx15대)-기정(4,000원x10ℓx15대) = △480 ○ 9.시설장비유지비 1,600 - 녹지시설물 유지관리장비 수선(부서변경) 경정(100,000원x10대x1회)-기정(200,000원x15대x1회) = △2,000 - 고사분수 시설관리비 600,000원x6회 = 3,600
	202 여비	43,470	33,480	9,990	
		43,470	33,480	9,990	01 국내여비 8,640 ○ 주요업무추진여비 8,640 - 조정분 20,000원x18명x4일x6월 = 8,640 ○ 공원개발 업무추진여비 45,000원x2명x3일x5회 = 1,350
	203 업무추진비	3,600	3,000	600	
		3,600	3,000	600	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

장:(3000)경제개발비 관:(3300)국토자원보존개발비 항:(3310)산림자원개발

세항:(3311)녹지행정

세세항:(120)경상적경비

[본청][단위:천원]

과 목		예 산 액	기 정 예 산 액	비 교 증 △ 감	산 출 기 초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
					○ 부서운영 업무추진비(정원:15명→18명) 경정(3,600,000원)-기정(3,000,000원) = 600
200	사업예산	6,491,359	4,766,377	1,724,982	[국 5,840 도 211,461 교 0] [균 1,000,000 기 0 시 5,274,058]
210	보조사업	2,480,898	2,471,260	9,638	[국 5,840 도 211,461 교 0] [균 1,000,000 기 0 시 1,263,597]
	301 일반보상금	21,222	12,000	9,222	
		20,022	12,000	8,022	09 공익근무요원보상금 ○ 공익근무요원 보상금(녹지·산림감시) 경정(20,022,000원)-기정(12,000,000원) = 8,022
		1,200	0	1,200	10 행사실비보상금 ○ 숲길조사 및 녹지관리단 교육훈련비 600,000원x2명 = 1,200 (국) 840 (도) 226 (시) 134
	401 시설비및부 대비	2,459,676	2,459,260	416	
		2,454,672	2,454,256	416	01 시설비 ○ 보호수 관리시설 경정(16,376,000원)-기정(15,960,000원) = 416 (도) 416

과 목		예 산 액	기 정 예 산 액	비 교 증 △ 감	산 출 기 초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
	220 자체사업	4,010,461	2,295,117	1,715,344	
	206 재료비	92,178	100,128	△7,95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수변공간 녹화용 수생식물 구입 전액감(부서변경) -4,000,000원 = △4,000 ○ 도심인도변 식재용 꽃나무 구입(부서변경) 경정(2,300원x6,000본)-기정(2,300원x15,000본) = △20,700 ○ 우리꽃(야생화) 구입(부서변경) 경정(2,000원x2,500본)-기정(2,000원x5,000본) = △5,000 ○ 코스모스 꽃길조성 종자구입(부서변경) 경정(15,000원x200ℓ)-기정(15,000원x750ℓ) = △8,250 ○ 특수지역녹화 수목구입 50,000원x600본 = 30,000
	401 시설비및부 대비	3,793,283	2,073,489	1,719,794	
		3,761,851	2,042,768	1,719,083	01 시설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효자 진입로변 완충녹지 보상 422,000원x88㎡ = 37,136 ○ 교통사고 발생위험 가로수 정비 100,000원x100본 = 10,000 ○ 대잠동(이동현대아파트~이마트) 가로수 식재 경정(110,000,000원x1식)-기정(80,000,000원x1식) = 30,000 ○ 산업도로 가로수 보호틀 정비(느티나무) 30,000원x300본 = 9,000

과 목		예 산 액	기 정 예 산 액	비 교 증 △ 감	산 출 기 초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
					○ 삼지공원 조성 30,000,000원x1식 = 30,000
					○ 시가지 미화용 꽃식재(부서변경) 경정(61,000,000원x1식)-기정(100,000,000원x1식) = △39,000
					○ 생울타리, 녹지대 관목전정(부서변경) △25,301
					- 녹지내 관목 전정(철쭉류) 전액감 -19,541,000원 = △19,541
					- 관목전정(반송외 5종) 전액감 -5,760,000원 = △5,760
					○ 녹지시설 유지관리(부서변경) △103,002
					- 잔디깎기 전액감 -42,480,000원 = △42,480
					- 제초작업 경정(785원x32,312㎡x1회)-기정(785원x50,812㎡x1회) = △14,522
					- 병해충방제 전액감 -46,000,000원 = △46,000
					○ 문성리 마을꽃동산, 꽃길조성(새마을사업 발상지) 전액감(부서변경) -40,000,000원 = △40,000
					○ 오천문덕11 어린이공원 조성공사(A=1,583㎡)(부서변경) 200,000
					- 실시설계비 200,000,000원x4.08/100 = 8,160
					- 시설비 191,840,000원x1식 = 191,840

장:(3000)경제개발비 관:(3300)국토자원보존개발비 항:(3310)산림자원개발

세항:(3311)녹지행정

세세항:(220)자체사업

[본청][단위:천원]

과 목		예 산 액	기 정 예 산 액	비 교 증 △ 감	산 출 기 초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
			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해도근린공원 구축물 실시설계비(부서변경) 50,000,000원x1식 = 50,000 ○ 해도근린공원 조성사업(부서변경) 1,500,000,000원x1식 = 1,500,000 ○ 해도근린공원 도시상징물 실시설계비 1,100,000,000원x2.75/100 = 30,250 ○ 고속버스터미널옆 화단 조성 30,000,000원x1식 = 30,000
		6,952	6,241	711	03 시설부대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도시녹화사업 시설부대비 79,000,000원x0.90/100 = 711
	405 자산취득비	6,000	2,500	3,500	
		6,000	2,500	3,500	01 자산및물품취득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업무용 전자복사기 구입 3,500,000원x1대 = 3,500

장:(3000)경제개발비 관:(3300)국토자원보존개발비 항:(3310)산림자원개발

세항:(3312)산림관리사업

세세항:(110)인건비

[본청][단위:천원]

과 목		예 산 액	기 정 예 산 액	비 교 증 △ 감	산 출 기 초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
3312	산림관리사업	7,018,430	6,389,140	629,290	[국 1,860,544 도 855,050 교 0] [균 1,028,859 기 0 시 3,273,977]
100	경상예산	216,426	236,142	△19,716	[국 17,478 도 3,778 교 0] [균 0 기 0 시 195,170]
110	인건비	70,451	64,067	6,384	[국 17,478 도 3,778 교 0] [균 0 기 0 시 49,195]
	101 인건비	70,451	64,067	6,384	
		70,451	64,067	6,384	10 일시사역인부임 ○ 도음산 산림문화수련장 청소 및 안전관리 인부임 48,910원x1명x120일 = 5,870 ○ 4대보험 기관부담금 5,870,000원x8.74% = 514
120	경상적경비	145,975	172,075	△26,100	
	201 일반운영비	119,275	100,575	18,700	
		99,275	80,575	18,700	01 일반운영비 ○ 1.일반수용비 2,000 - 사방기념관 무인경비시스템 설치비 900,000원x1식 = 900 - 산림문화수련장내 안전사고 방지 표지판 구입 1,100 · 추락 및 낙석주의 표지판 200,000원x4개 = 800

과 목		예 산 액	기 정 예 산 액	비 교 증 △ 감	산 출 기 초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
			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물놀이 안전사고주의 표지판 300,000원x1개 = 300 ○ 3.공공요금및제세 10,450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전기요금 5,400 · 사방기념공원 경정(1,200,000원x6월)-기정(300,000원x6월) = 5,400 - 수도요금 1,200 · 도음산 산림문화수련장 200,000원x6월 = 1,200 - 도음산 산림문화수련장 손해배상 공제회비 3,850,000원x1식 = 3,850 ○ 7.임차료 4,250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기관단체 산불진화인력 수송버스 임차 450,000원x5대x1회 = 2,250 - 사방기념공원 초화목 염해 및 한해피해방지 급수차량 임차 200,000원x2대x5회 = 2,000 ○ 9.시설장비유지비 2,000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무선시설장비 수리 1,000,000원x2회 = 2,000
	301 일반보상금	6,700	51,500	△44,800	
		5,200	0	5,20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0 행사실비보상금 ○ 유해야생동물 포획활동 실경비 보상 4,200

과 목		예 산 액	기 정 예 산 액	비 교 증 △ 감	산 출 기 초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
					- 식대 5,000원x2명x70개리(동)x2회 = 1,400
					- 유류대 10,000원x2명x70개리(동)x2회 = 2,800
					○ 기관단체 산불진화인력 간식비 1,000원x500명x2회 = 1,000
		1,500	51,500	△50,000	12 기타보상금 ○ 야생조수 농작물 피해보상금 전액감(과목변경) -50,000,000원 = △50,000
200	사업예산	6,802,004	6,152,998	649,006	[국 1,843,066 도 851,272 교 0] [균 1,028,859 기 0 시 3,078,807]
210	보조사업	5,861,678	5,754,678	107,000	[국 1,843,066 도 851,272 교 0] [균 1,028,859 기 0 시 2,138,481]
	301 일반보상금	57,000	0	57,000	
		57,000	0	57,000	12 기타보상금 ○ 야생동물피해 농작물 보상금(과목변경) 57,000,000원x1식 = 57,000 (도) 7,000 (시) 50,000
	401 시설비및부 대비	4,930,706	4,880,706	50,000	
		4,913,201	4,863,201	50,000	01 시설비 ○ 생태숲조성 사전환경성 및 사전재해 영향성검토

과 목		예 산 액	기 정 예 산 액	비 교 증 △ 감	산 출 기 초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
					50,000,000원x1식 = 50,000
	220 자체사업	940,326	398,320	542,006	
	308 자치단체등 이전	63,750	0	63,750	
		63,750	0	63,750	05 자치단체간부담금 ○ 임도신설 63,750,000원 = 63,750
	401 시설비및부 대비	845,976	382,520	463,456	
		840,000	380,000	460,000	01 시설비 ○ 사방기념공원내 발굴 문화유적보존 전시시설 150,000,000원x1식 = 150,000 ○ 사방기념공원 안내표지판 설치(교통, 사인안내판) 80,000,000원x1식 = 80,000 ○ 도음산 산림문화수련장 가로등 설치공사 2,000,000원x15개소 = 30,000 ○ 임도 개보수(L=3km) 200,000,000원x1식 = 200,000
		5,976	2,520	3,456	03 시설부대비 ○ 사방기념공원 조성 시설부대비 280,000,000원x0.72/100 = 2,016

과 목		예 산 액	기 정 예 산 액	비 교 증 △ 감	산 출 기 초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
					○ 임도 개보수 시설부대비 200,000,000원x0.72/100 = 1,440
	402 민간자본이 전	10,000	0	10,000	
		10,000	0	10,000	02 민간대행사업비 ○ 비학산 생태숲 문화재 지표조사 10,000,000원x1식 = 10,000
	405 자산취득비	10,300	5,500	4,800	
		10,300	5,500	4,800	01 자산및물품취득비 ○ 사방기념관 집기 구입 4,000,000원x1식 = 4,000 ○ 산림문화수련장 유지관리 장비구입 800 - 동력잔디깎기 800,000원x1대 = 800

장:(3000)경제개발비 관:(3300)국토자원보존개발비 항:(3320)치수재난관리

세항:(3321)치수및재해대책사업 세세항:(210)보조사업

[본청][단위:천원]

과 목		예산액	기정 예산액	비교 증△감	산출기초			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국	도	교	초
3320	치수재난관리	1,574,200	1,405,460	168,740	[국 0]	도 696,700	교 0]
					[국 300,000]	도 0	교 577,500]
3321	치수및재해대책사업	1,574,200	1,405,460	168,740	[국 0]	도 696,700	교 0]
					[국 300,000]	도 0	교 577,500]
200	사업예산	1,292,815	1,124,075	168,740	[국 0]	도 696,700	교 0]
					[국 300,000]	도 0	교 296,115]
210	보조사업	1,141,075	1,124,075	17,000	[국 0]	도 696,700	교 0]
					[국 300,000]	도 0	교 144,375]
	201 일반운영비	22,800	19,000	3,800				
		22,800	19,000	3,800	01 일반운영비			
					○ 1.일반수용비			2,300
						(도)		2,300
					- 재난대비 홍보물 제작	2,300,000원x1식	=	2,300
						(도)		2,300
					○ 4.운영수당			1,500
						(도)		1,500
					-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 협의검토 수당			
					50,000원x3명x10회		=	1,500
						(도)		1,500
	202 여비	13,200	0	13,200				
		2,700	0	2,700	01 국내여비			
					○ 재난.재해 선진방재시스템 비교견학(상사업비)			

장:(3000)경제개발비 관:(3300)국토자원보존개발비 항:(3320)치수재난관리

세항:(3321)치수및재해대책사업 세세항:(210)보조사업

[본청][단위:천원]

과 목		예 산 액	기 정 예 산 액	비 교 증 △ 감	산 출 기 초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
					45,000원x4명x5일x3회 = 2,700 (도) 2,700
		10,500	0	10,500	03 국외여비 ○ 재난담당공무원 해외연수(상사업비, '06년 재난관리우수) 3,500,000원x3명 = 10,500 (도) 10,500
220	자체사업	151,740	0	151,740	
	401 시설비및부 대비	146,740	0	146,740	
		146,740	0	146,740	01 시설비 ○ 형산강수변 공원화사업 실시설계비 5,800,000,000원x2.53/100 = 146,740
	405 자산취득비	5,000	0	5,000	
		5,000	0	5,000	01 자산및물품취득비 ○ 재난대응시스템 GIS서버 5,000,000원x1대 = 5,000

장:(3000)경제개발비 관:(3300)국토자원보존개발비 항:(3330)건설관리

세항:(3331)건설행정

세세항:(110)인건비

[본청][단위:천원]

과 목		예 산 액	기 정 예 산 액	비 교 증 △ 감	산 출 기 초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
3330	건설관리	42,430,971	38,965,835	3,465,136	[국 80,000 도 850,000 교 0] [균 0 기 0 시 41,500,971]
3331	건설행정	1,138,727	1,087,420	51,307	
100	경상예산	1,099,527	1,059,420	40,107	
110	인건비	960,177	930,337	29,840	
	101 인건비	960,177	930,337	29,840	
		679,912	650,072	29,840	09 일용인부임 ○ 철도건설목 안내원 20,392 - 피복비 경정(130,000원x24명x2회)-기정(130,000원x24명x1회) = 3,120 - 근속가산금 39,980원x24명x3일x12월x50% = 17,272 ○ 도로수로원 근속가산금 38,630원x2명x3일x12월x50% = 1,391 ○ 도로건설사업 민원안내 보조인부 8,057 - 기본급 27,630원x1명x150일 = 4,145 - 상여금 690,750원x1명x150% = 1,037 - 명절휴가비 690,750원x1명x50% = 346 - 정액급식비 80,000원x1명x6월 = 480

장:(3000)경제개발비 관:(3300)국토자원보존개발비 항:(3330)건설관리

세항:(3331)건설행정

세세항:(110)인건비

[본청][단위:천원]

과 목		예 산 액	기 정 예 산 액	비 교 증 △ 감	산 출 기 초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
					- 교통보조비 30,000원x1명x6월 = 180 - 가족수당 50,000원x1명x6월 = 300 - 주휴수당 27,630원x1명x26일 = 719 - 시간외근무수당 5,180원x1명x22시간x6월 = 684 - 연차수당 27,630원x1명x6일 = 166
120	경상적경비	139,350	129,083	10,267	
	201 일반운영비	46,968	44,758	2,210	
		46,968	44,758	2,210	01 일반운영비 ○ 1.일반수용비 1,500 - 국유지 무단점용 무허가건물 행정대집행 1,500,000원x1식 = 1,500 ○ 3.공공요금및제세 600 - 철도건널목 초소 상수도요금 20,000원x5개소x6월 = 600 ○ 6.급량비 110 - 부서운영 급량비 경정(3,935,000원)-기정(3,825,000원) = 110
	202 여비	58,275	50,715	7,560	

장:(3000)경제개발비 관:(3300)국토자원보존개발비 항:(3330)건설관리

세항:(3331)건설행정

세세항:(120)경상적경비

[본청][단위:천원]

과 목		예 산 액	기 정 예 산 액	비 교 증 △ 감	산 출 기 초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
		43,155	35,595	7,560	01 국내여비 ○ 주요업무추진여비 7,560 - 강원(1명) -20,000원x1명x5일x6월 = △600 - 조정분 20,000원x17명x4일x6월 = 8,160
	301 일반보상금	3,887	3,390	497	
		3,107	2,610	497	09 공익근무요원보상금 ○ 공익근무요원 497 - 기본급 경정(80,000원x1명x12월)-기정(65,000원x1명x12월) = 180 - 중식비 경정(5,000원x1명x22일x12월)-기정(4,000원x1명x22일x12월) = 264 - 교통비 경정(2,000원x1명x22일x12월)-기정(1,800원x1명x22일x12월) = 53
	200 사업예산	39,200	28,000	11,200	
	220 자체사업	39,200	28,000	11,200	
	403 자치단체등	35,200	24,000	11,200	

장:(3000)경제개발비 관:(3300)국토자원보존개발비 항:(3330)건설관리

세항:(3331)건설행정

세세항:(220)자체사업

[본청][단위:천원]

과 목		예 산 액	기 정 예 산 액	비 교 증 △ 감	산 출 기 초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
	자본이전				
		35,200	24,000	11,200	02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○ 철도건널목 청원시설 경정(4,400,000원x8개소)-기정(3,000,000원x8개소) = 11,200

과 목		예 산 액	기 정 예 산 액	비 교 증 △ 감	산 출 기 초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
3332	지역현안도로사업	36,718,598	33,943,410	2,775,188	[국 0 도 850,000 교 0] [균 0 기 0 시 35,868,598]
200	사업예산	36,367,744	33,743,410	2,624,334	[국 0 도 850,000 교 0] [균 0 기 0 시 35,517,744]
210	보조사업	2,506,840	1,906,840	600,000	[국 0 도 850,000 교 0] [균 0 기 0 시 1,656,840]
	401 시설비및부 대비	2,506,840	1,906,840	600,000	
		2,500,000	1,900,000	600,000	01 시설비 ○ 장흥동 도시계획도로(중1-115) 확·포장(L=420m,B=20m) 600,000,000원x1식 = 600,000 (도) 300,000 (시) 300,000
220	자체사업	33,860,904	31,836,570	2,024,334	
	401 시설비및부 대비	33,860,904	31,836,570	2,024,334	
		32,900,000	31,100,000	1,800,000	01 시설비 ○ 감실골 도시계획도로(중1-116) 확.포장(L=840m, B=20m) 500,000,000원x1식 = 500,000 ○ 포항4단지 도시계획도로(대2-30) 개설공사(L=2.1km, B=30m) 경정(1,500,000,000원x1식)-기정(1,000,000,000원x1식) = 500,000

과 목		예산액	기정 예산액	비교 증△감	산출 기초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
					○ 오천 서문교 가설공사(L=105m, B=30m)(특교500백만원) 500,000,000원x1식 = 500,000 ○ 흥해 성내 도시계획도로(중1-99)개설(도로개설 L=0.05km) 300,000,000원x1식 = 300,000
		900,000	700,000	200,000	02 감리비 ○ 동대~이동간 도로개설 전면책임감리 용역비 경정(500,000,000원x1식)-기정(300,000,000원x1식) = 200,000
		60,904	36,570	24,334	03 시설부대비 ○ 지역현안도로사업(자체사업) 시설부대비 경정(33,100,000,000원x0.23/100x0.8) - 기정(15,900,000,000원x0.23/100) = 24,334
	400 예비비등	350,854	200,000	150,854	
	420 기타	350,854	200,000	150,854	
	802 반환금기타	150,854	0	150,854	
		150,854	0	150,854	02 시·도비보조금반환금 ○ 도시토목사업비 50,000,000원 = 50,000 ○ 지역현안도시토목사업비 66,663,000원 = 66,663 ○ 2006년도 이월 지역현안도시토목사업비

장:(300)경제개발비 관:(330)국토자원보존개발비 항:(3330)건설관리

세항:(3332)지역현안도로사업 세세항:(420)기타

[본청][단위:천원]

과 목		예 산 액	기 정 예 산 액	비 교 증 △ 감	산 출 기 초
장·관·항·세항·세세항	목				
					34,191,000원 = 34,191

과 목		예 산 액	기 정 예 산 액	비 교 증 △ 감	산 출 기 초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
3333	도로유지관리사업	4,573,646	3,935,005	638,641	[국 80,000 도 0 교 0] [균 0 기 0 시 4,493,646]
200	사업예산	4,571,046	3,932,405	638,641	[국 80,000 도 0 교 0] [균 0 기 0 시 4,491,046]
210	보조사업	160,000	240,000	△80,000	[국 80,000 도 0 교 0] [균 0 기 0 시 80,000]
	401 시설비및부 대비	160,000	240,000	△80,000	
		160,000	240,000	△80,000	01 시설비 ○ 우현사거리~영신고 중앙분리대 설치(L=1.2km) 경정(160,000,000원x1식)-기정(240,000,000원x1식) = △80,000 (국) △40,000 (시) △40,000
220	자체사업	4,411,046	3,692,405	718,641	
	401 시설비및부 대비	3,507,732	3,092,405	415,327	
		3,501,040	3,089,040	412,000	01 시설비 ○ 도로시설 및 교량 유지보수 경정(400,000,000원x1식)-기정(300,000,000원x1식) = 100,000 ○ 가로등 설치공사(대도사거리~등외과 사거리) 3,500,000원x10등 = 35,000

과 목		예 산 액	기 정 예 산 액	비 교 증 △ 감	산 출 기 초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
					○ 죽도어시장 삼거리~세일식당앞 포장덧씌우기(L=1,300m B=15m) 127,000,000원x1식 = 127,000
					○ 포항여고~여중간 도로정비공사(L=752m) 150,000,000원x1식 = 150,000
		6,692	3,365	3,327	03 시설부대비 ○ 도로유지관리 시설부대비 462,000,000원x0.72/100 = 3,327
	403 자치단체등 자본이전	903,314	600,000	303,314	
		903,314	600,000	303,314	02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○ 북부해수욕장 지중화 공사 경정(903,313,134원x1식)-기정(600,000,000원x1식) = 303,314

장:(3000)경제개발비 관:(3400)교통관리비 항:(3410)교통관리 세항:(3411)교통관리사업 세세항:(110)인건비 [본청][단위:천원]

과 목		예 산 액	기 정 예 산 액	비 교 증 △ 감	산 출 기 초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
3400	교통관리비	63,817,965	62,607,190	1,210,775	[국 161,810 도 694,649 교 0] [균 0 기 0 시 62,961,506]
3410	교통관리	63,817,965	62,607,190	1,210,775	[국 161,810 도 694,649 교 0] [균 0 기 0 시 62,961,506]
3411	교통관리사업	63,817,965	62,607,190	1,210,775	[국 161,810 도 694,649 교 0] [균 0 기 0 시 62,961,506]
100	경상예산	231,653	201,786	29,867	
110	인건비	37,343	37,476	△133	
	101 인건비	37,343	37,476	△133	
		3,546	4,117	△571	02 수당 ○ 초과근무수당(계약직) △571 - 시간외근무수당(조정분:40시간→27시간) 경정(2,946,000원)-기정(3,517,000원) = △571
		30,642	30,204	438	08 기타직보수 ○ 교통전문직 연봉(계약직 "다"급) 경정(30,642,000원)-기정(30,204,000원) = 438
120	경상적경비	194,310	164,310	30,000	
	301 일반보상금	161,850	131,850	30,000	
		161,850	131,850	30,000	12 기타보상금

장:(3000)경제개발비 관:(3400)교통관리비 항:(3410)교통관리 세항:(3411)교통관리사업 세세항:(120)경상적경비 [본청][단위:천원]

과 목		예 산 액	기 정 예 산 액	비 교 증 △ 감	산 출 기 초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
					○ 교통카드 구입비 지원 경정(1,500원x40,000매)-기정(1,500원x20,000매) = 30,000
200	사업예산	61,070,212	60,389,304	680,908	[국 161,810 도 694,649 교 0] [균 0 기 0 시 60,213,753]
210	보조사업	1,569,739	1,547,304	22,435	[국 161,810 도 694,649 교 0] [균 0 기 0 시 713,280]
	301 일반보상금	1,271,129	1,248,694	22,435	
		1,271,129	1,248,694	22,435	12 기타보상금 ○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경정(155,077,000원x1식)-기정(132,642,000원x1식) = 22,435 (도) △64,419 (시) 86,854
220	자체사업	59,500,473	58,842,000	658,473	
	307 민간이전	58,980,473	58,530,000	450,473	
		58,980,473	58,530,000	450,473	09 운수업계보조금 ○ 유류세액(주행세)인상분 보전 사업용자동차 보조금 경정(57,166,473,000원)-기정(56,716,000,000원) = 450,473
	402 민간자본이전	520,000	312,000	208,000	
		520,000	312,000	208,000	01 민간자본보조

장:(300)경제개발비 관:(340)교통관리비 항:(3410)교통관리 세항:(3411)교통관리사업 세세항:(220)자체사업 [본청][단위:천원]

과 목		예 산 액	기 정 예 산 액	비 교 증 △ 감	산 출 기 초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
					○ 택시정보화사업 경정(1,300,000원x500대x80/100) - 기정(1,300,000원x300대x80/100) = 208,000
	400 예비비등	2,516,100	2,016,100	500,000	
	420 기타	2,516,100	2,016,100	500,000	
	701 기타회계전 출금	2,516,100	2,016,100	500,000	○ 기타교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경정(1,250,000,000원)-기정(750,000,000원) = 500,000
세 출 합 계		187,733,381	169,077,675	18,655,706	